

# 학 칙

## 목 차

### 제 1 장 경주대학교

1. 경주대학교학칙
2. 학사에 관한 규정
3.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
4.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

### 제 2 장 대학원

1. 대학원학칙
2.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3. 외국인학생전형에 관한 규정
4. 등록및학적에 관한 규정
5. 수업및학점에 관한 규정
6.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7.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8.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9.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10. 공개강좌및연구생에 관한 규정
11. 학생지도에 관한 규정
12. 장학금에 관한 규정
13. 학과(전공)장에 관한 규정
14.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15. 대학원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16. 대학원생권리장전

# 경주대학교학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하여 관광산업분야를 포함한 제 학문의 깊은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①본 대학교에는 대학, 학부(과)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두며, 대학의 계열 및 학부(과) 편성과 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3.7.1., 2014.3.1>

②대학은 학부(과)를 두며 학부에는 2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7.1>

③<삭제 2010.3.1>

④계열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부별 또는 학과별로 입학정원을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 2(계열 및 학과의 폐지) ①계열 및 학과는 구조조정규정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②폐과된 계열 및 학과로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계열 및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조신설 2009.8.1>

제3조(삭제)

제4조(대학원학칙과 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1>

## 제2장 부속·부설기관

제5조(부속·부설기관) ①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원, 박물관, 정보전산원, 방송신문사, 생활관, 공동기자재센터, 보건진료실, 문화콘텐츠진흥원, 교육개발 혁신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진로·심리상담지원혁신센터, 학생역량개발혁신센터, 글로벌교육역량혁신센터, Logos College을 둔다.<개정 2003.7.1, 2004.3.1, 2007.12.1, 2008.9.1, 2009.8.1, 2010.3.1, 2011.3.1., 2012.7.1., 2013.10.21., 2015.3.1., 2016.12.13., 2017.10.19.>

②본 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한국무형문화재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0.12.27., 2013.06.18., 2015.3.1>

③<삭제 2007.12.1>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

제6조(생활관) <삭제 2009.8.1>

②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1>

### 제3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제7조(수업년한) ①본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0.3.1, 2014.3.1>

②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며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0.3.1., 2014.3.1>

③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6학기 이상 이수하여 별표3의 기준 이상 취득한 자로서 총 평균평점이 4.30 이상이고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 자로 한다. <개정 2007.3.1, 2008.3.1, 2010.3.1., 2014.3.1>

④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총장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학생의 수업연한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3.1>

제8조(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19.01.01.>

### 제4장 학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 및 학기) ①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하고, 이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②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필요에 따라 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둔다. 여름 계절학기는 3학기, 겨울 계절학기는 4학기로 통칭하며,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3.1.>

제10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중수업(블록), 계절학기 등의 경우에는 수업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3.1>

②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매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3.1>

제11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 ②임시휴업일 지정 및 방학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 ③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업일에도 시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제5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 제1절 시 기

제12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3.1>

### 제2절 자 격

제13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 1에 해당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제14조(편입학자격)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학사학위 취득자는 제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 해당 학부(과)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한다.

③법령에 의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 대학교와 협정에 의한 연계교육 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입학정원 외로 해당학과(전공)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3.1>

제15조(재입학자격)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총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단, 특수체육교육학과 및 간호학과는 해당 학과의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06.3.1, 2009.3.1>

②재입학은 제적 전 재학하였던 학부(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하되, 제적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자 중 수업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학부(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칙의 학부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를 준용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6.3.1.>

④모집이 중지된 학부(과)의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가 있는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3.1>

### 제3절 절 차

제16조(지원) ①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모집요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7.3.1, 2010.3.1>

1. <삭제 2010.3.1>

2. <삭제 2010.3.1>

3. <삭제 2010.3.1>

②재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

③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

제17조(입학전형) ①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선발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입학자의 선발에는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대학별고사성적(논술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신체검사 등)과 기타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전형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모집시마다 총장이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제18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9조(입학절차)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보증인) ①보증인은 학생의 학부형 또는 기타의 자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

②보증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새 보증인으로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전부(과) · 전공변경

제22조(전부·과, 전공변경) ①전부(과)는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는 것으로 제2학년 이상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초 30일 이내에 총장이 허가하되,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3.1., 2005.3.1., 2017.3.1>

②체육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부(과)할 수 없다

③주·야간 학부(과) 간 전부(과)는 여석(모집단위별 입학정원-재적생수) 범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④특수체육교육학과 및 간호학과는 타 학부(과)와 상호 전부(과)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1><개정 2009.3.1>

⑤전공변경은 총장이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3.1, 2005.3.1>

제23조(절차) ①전부(과)를 지원하는 자는 해당 학부(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05.3.1>

③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

제24조(이수과목 및 학점) 전부(과)한 자는 전입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제25조 <삭제>

## 제7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 제1절 휴학·복학

제26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중 휴학은 5회에 한하며, 1회의 휴학기간은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3.3.1, 2010.12.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신 및 육아에 따른 휴학,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3.1.><개정2017.3.1.>

④계속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연기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연기 1회는 휴학 1회로 본다. <개정 2003.3.1>

제27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하여야 할 시기가 이미 이수한 학기와 중복될 경우에는 1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군복무 중인 자가 수업일수 3분의 2를 충족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3.1>

## 제2절 퇴학·제적

제28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보증인연서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7.3.1>
2. 소정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7.3.1>
3. 재학중 연속 4회 또는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외국인 유학생의 제적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3.1>

### 6.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 <신설 2019.01.01.>

②제1항 제3호가 졸업하는 학기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장 교과·이수 및 졸업

### 제1절 교과·수업·학점

제30조(교과) ①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3.1>

②교양과목은 기초교양, 자유교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3.1>

③전공과목의 종류와 학점은 소속 학부(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31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5.3.1>

②<삭제 2005.3.1>

제32조(교과과정) ①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2 이상의 전공 또는 학부(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을 둘 수 있다.

③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아 이수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7.3.1>

④교과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총장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교과목 및 협정된 타 대학에서 개설하는 인터넷 강의 교과목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⑥현장 인턴학습(이하“인턴학습”이라 한다)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며, 인턴

- 학습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6.1>
- ⑦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3.1>
- 제33조(강의시간표) 강의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 제34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수강신청자가 일정 수 이하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 제35조(수강학점) ①매 학기 취득기준 수강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1,2학년은 매학기 취득기준 수강학점을 20학점으로 하고**,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9.01.01.>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취득기준 수강학점 외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③시간제학생의 매 학기 취득기준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학기의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5.3.1.><개정2016.3.1>
- 제36조(학점인정 및 취소) ①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 ②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③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인터넷강의의 경우 졸업학점의 20%까지만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2017.3.1>
- 제36조의 2(군 복무 중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인정)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로 휴학 중인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개설하는 정규학기 원격수업을 이수하고 성적을 인정 받은 자에게는 학기당 3학점 이내, 최대 12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제37조(국내·외 대학에서의 학점취득 특례) 협정된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다만, 협정되지 아니한 외국 대학일 경우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3.3.1>
- 제38조(특별학점 인정)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련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8.5.29>
  2.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개정 2018.5.29>
  3. 본 대학교 국제교류처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0.3.1, 2011.3.1>
  4. <삭제 2008.3.1>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04.3.1>

- ②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 및 글로벌리더십 인증, 창의인성캠프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16.3.1>
  - ③특별학점의 인정은 통산하여 9학점이내로 한다.
  - ④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9조(재수강) ①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3.1>
- ②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성적이 우수한 과목을 인정한다.  
 <개정 2004.3.1., 2015.3.1>
  - ③재수강 허용학점 및 재수강 교과목의 취득점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3.1.>

### 제2절 시험·성적

- 제40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 제41조(시험방법) ①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과목의 성질에 따라 실기·실습·구술·과제물 및 세미나 평가 등에 의할 수 있다.
- ②장애학생들이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
- 제42조(추가시험)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게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추가시험 사유가 학생 본인의 책임이 아닐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3조(성적반영)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 하되, 실험·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학업성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44조(성적분류) ①각 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이상을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점	실 점	등 급	평 점	실 점
A+	4.5	95-100	C°	2.0	70-74
A°	4.0	90- 94	D+	1.5	65-69
B+	3.5	85- 89	D°	1.0	60-64
B°	3.0	80- 84	F	0.0	0-59
C+	2.5	75- 79			

- ②전항의 등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평가기호를 사용한다.  
 S: 인턴학습,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인증, 해외학기제 이수, 창의인성캠프 등에 의

하여 과목 통과로 받은 평가 기호 <개정 2004.3.1., 2011.4.14., 2015.3.1., 2016.3.1>

U: 인턴학습,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인증, 해외학기제 이수, 창의인성캠프 등에 의하여 과목 낙제로 받은 평가 기호 <개정 2004.3.1., 2011.4.14., 2015.3.1., 2016.3.1>

③평점별 실점수의 환산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결석자에 대한 제재) ①당해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때에는 그 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개정 2010.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13>

제46조(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 3교과목 이상 또는 9학점 이상 성적등급이 'F' 또는 'U'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과 보호자 및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5.3.1.>

### 제3절 졸업

제47조(졸업)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다.

1. 별표3의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해외학기제를 이수한 자,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해당학과(전공) 인턴학습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학점을 전공최저이수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4.6.1, 2006.3.1, 개정 2008.3.1., 2010.3.1., 2015.3.1>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학부(과)별로 별도의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 충족하여야 한다. 단, 학부(과)별 졸업요건은 학부(과)장 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
4.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는 학기 말에 한다.

③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복수전공, 교직이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원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할 수 있다.<신설 2003.7.1> <개정 2004.3.1, 2010.3.1., 2010.12.1., 2016.12.13., 2019.01.01.>

제48조(학위)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전공분야에 따라 학위증서(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의 미제출자와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②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중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는 총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3.1>

③전공별 학위는 별표2와 같다.

제48조의 2(공동·복수학위) 외국대학교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교 복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제49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 과정의 성질상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부(과) 또는 전공은 실험·실습 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자격증취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3.1, 2010.12.1>

②<삭제 2010.3.1>

③졸업논문 지도를 위하여 졸업학기 초 학부(과)장의 배정 요청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한다. 다만, 졸업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3.1, 2010.3.1>

④실기발표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할 수 있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⑤졸업논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부전공) ①소속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 외에 타학과(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한다. 다만, 특수체육교육학과 및 간호학과는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다. <개정 2005.3.1, 2008.3.1, 2010.3.1>

②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1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08.3.1, 2010.3.1., 2014.3.1>

③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④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복수전공) ①소속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 외에 타학과(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인정한다. 다만, 특수체육교육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며, 간호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다. <개정 2005.3.1, 2009.3.1, 2010.3.1>

②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별표 3의 전공 최저이수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수료학점) ①학년별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

1. 제1학년 : 33학점 이상 <개정 2010.3.1>
2. 제2학년 : 65학점 이상 <개정 2010.3.1>
3. 제3학년 : 98학점 이상 <개정 2010.3.1>    4. 제4학년 : 130학점 이상 <개정 2010.3.1>
5. 삭제 <신설 2004.3.1> <개정 2010.3.1., 2014.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의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6.3.1>

1. 제1학년 : 35학점 이상
2. 제2학년 : 70학점 이상
3. 제3학년 : 105학점 이상
4. 제4학년 : 140학점 이상

제53조(졸업의 취소) 제36조제2항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4조(장학금) ①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품행, 학업성적 등을 참작하여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③장학금 및 대여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과 학생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56조(징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징계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3.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57조(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장 납부금

제58조(등록금 납부의무) ①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8.9.1>

②학점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3.1>

제59조(복학자의 등록금) ①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등록금을 면제한다.

②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60조(금액 및 기일)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직전에 이를 공시한다.

제61조(감액 및 면제금지)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

제62조(등록금 반환) ①입학금 또는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5.3.1>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5.3.1>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 을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아니 하게 된 경우

③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 되 수업료는 제2항의 반환사유에 따라 별표5와 같이 반환금액을 구분한다. <개정 2005.3.1, 2007.10.1, 2008.9.1>

제62조의 2(계절학기 수강료등 반환) ①계절학기 수강료 및 기타 납부금(이하 “수강료등” 이라 한다.)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8.9.1>

②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반환한 다. <신설 2008.9.1> <개정 2011.12.14>

1. 계절학기 운영자 및 개설과목담당교수의 사정으로 인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폐강기준에 의하여 과목이 폐강된 경우
3. 학생이 자퇴 또는 기타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삭제 2011.12.14>

## 제11장 직 제

제63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의 2(산학협력단) ①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③산학협력단에는 창업지원센터와 부설연구기관을 두며, 부설연구기관으로는 문화 관광산업연구원, 그린에너지자원연구원, 지역발전연구원, 신라음식문화연구원, 실크 로드연구원, 경주국제화연구원을 둔다. 각 연구원에는 관련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1><개정 2008.9.1, 2009.8.1, 2010.3.1, 2010.10.1, 2011.3.1, 2013.12.1, 2014.6.30., 2015.3.1>

④<삭제 2009.8.1>

<조신설 2006.1.1>

제63조의 3(학교기업) ①본 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

조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별표 4]의 학교기업을 둔다.<개정 2011.12.14>

②각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경북 경주시 태종로 188 내에 둔다. <개정 2010.10.1>

③이 학칙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기업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6.1.1>

제63조의 4(학교기업의 현장실습활용) ①인턴학습은 15주(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으로 18학점, 4주(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으로 3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11.12.14>

②인턴학습은 최대 2학기 36학점(단, 3학점 인턴학습은 제외한다)까지 이수 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인턴학습운영 지침을 준용한다.<조신설 2006.1.1><개정 2011.12.14>

제63조의 5(보상금지급)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할 수 있다.

⑤보상을 제외한 순이익금은 교비에 이월하여 집행하되 이중 20%는 학교기업의 연구개발비로, 30%는 학교기업의 기자재 및 시설비로 재투자한다.

⑥학칙에서 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1>

## 제12장 교수회

제64조(교수회) ①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7.22>

제65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6조(소집 및 의결) ①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개정2015.3.1.>

제67조(교무위원회) ①본 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 기획경영부총장, 국제·교학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취·창업능력개발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원장, 정보화책임관 및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1, 2008.9.1, 2008.10.1, 2009.8.1, 2011.3.1., 2013.3.1. 2014.6.30. 2015.3.1., 2016.3.17., 2017.10.19.>

③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학부(과), 부속·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변경 및 제반 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8조의 2(대학평의원회)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3.1>

제68조의 3(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3.1>

### 제14장 재외국민·외국인학생·위탁생·시간제등록생 및 장애학생

제69조(외국인학생 등) 재외국민·귀순 북한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0조(위탁생) ①정부 각 기관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추천으로 재직자의 위탁교육을 요청하면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제70조의 2(시간제등록생) ①시간제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며, 선발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 3(장애학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3.1>

제71조(학칙준용) 재외국민·귀순북한동포·외국인학생·위탁생 및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학칙을 준용한다.

## 제15장 공개강좌

제72조(공개강좌의 개설) 교양,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73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장 학생활동

제74조(학생회) ①능동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생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대학교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르며, 학생회 회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75조(학생준수) 학생이 학교생활 및 학생활동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활동의 승인)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 부착 및 배포
3. 교외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교외 인사의 학내 초청
5. 동아리조직<개정 2005.3.1>
6. 교외 각 단체 및 개인과의 연계활동
7. 학내 잔류 및 시설물 이용

②전항 제5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단체의 특수성과 전문성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77조(간행물)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여야 한다.

②간행물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의 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편집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부하여야 한다.

제78조(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및 교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3.1>

제79조(학생지도) ①총장은 학년초에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과 학업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1>

②지도교수는 대상학생을 성실히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고 개별상담에 응하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장 학칙개정

제80조(개정절차) ①학칙개정안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구성원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7.1><개정 2008.9.1, 2009.8.1>

②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단, 입학 총정원의 변경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신설 2007.7.1><개정 2008.9.1, 2009.8.1>

제81조(보고) <삭제 2012.07.01>

## 제18장 대학자체평가

제82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 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본 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8.1>

## 부 칙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199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2조, 제3조, 제29조,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51조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8조, 제47조, 제51조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산업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경영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다음에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7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주·야), 관광개발학과는 관광학부로

나. 관광행정학과는 법정학부에

다.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는 경영학부에

라. 관광조경학과, 도시공학과는 공간환경학부에

마.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정보공학부로 통합한다.

④(외국어교육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5조 제3항의 “외국어교육원”에 관한 사항은 1996년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입금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납입금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62조의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97학년도 2학

기 이후의 납입금 및 입학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학칙중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2조 제3, 4호는 199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47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별표3 중 단일전공 이수자의 전공최저이수학점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커뮤니케이션학부(주·야) 2000학년도 입학자는 방송언론광고학부(주·야) 입학자로 간주하고, 경영학부의 유통경영학전공은 경영학전공으로 운영한다.

4. 제5조 제2항 중 '한국광고영상박물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예술학부, 영상예술학전공 및 산업미술학전공의 재적생은 2002학년도부터 각각 학부 및 전공명칭이 변경된 사진영상디자인학부, 사진영상학전공 및 시각디자인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의 재적생은 2003학년도 부터 학부명칭이 변경된 건설환경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토목공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공명칭이 변경된 사회기반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사진영상디자인학부의 사진영상학전공 재적생은 2003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컴퓨터전자공학부 휴학생으로서 2003학년도 컴퓨터전자공학부의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컴퓨터전자공학부의 컴퓨터전자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4. 사회체육학과 휴학생으로서 2003학년도 생활체육학부의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자는 생활체육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상으로 복학하는 자의 경우 생활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경영학부 야간에 재적중인 자는 졸업년도에 관계없이 경영학부 주간에 개설된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제2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2월 28일까지의 휴학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변경 학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규정중 제2장 제5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학부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학부 외식사업학전공 재적생은 2004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외식·조리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법정학부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학부 및 전공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까지 법정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법정학부 재적생이 200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찰법학부 또는 사회복지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개정학칙 시

행이전에 전공배정을 받은 법정학부 재적생이 200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다.

가. 법학전공 재적생은 경찰법학부 법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보고, 부동산학전공 재적생은 경찰법학부의 부동산개발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분다.

나. 행정학전공 재적생은 사회복지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분다.

3.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2004학년도부터 개정학칙의 학과 혹은 전공의 재적생으로 분다.

가. 건설환경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재적생은 2004학년도부터 학부에서 분리된 관광조경학과의 재적생으로 분다.

나. 건설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은 2004학년도부터 학부에서 분리된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분다.

다. 건설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은 2004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바이오환경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분다.

라.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이 200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 관광조경학과, 건축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중에서 소속 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사진영상디자인학부의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전공배정을 받은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의 재적생이 200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미디어아트학부의 디지털영상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보며,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사진영상디자인학부 재적생이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미디어아트학부의 재적생으로 분다.

5. 컴퓨터전자공학부의 2003학년도 입학자 및 동일학년에 재적중인 자는 2004학년도부터 각각 학부명칭이 변경된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및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3학년도 말에 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가.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전공을 배정하지 않은 컴퓨터전자공학부 재적생이 2003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 학부명칭이 변경된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중에서 소속 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

나.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컴퓨터전자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재적생이 복학할 경우 각각 학부명칭이 변경된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보고, 컴퓨터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재적생이 복학할 경우 각각 학부 및 전공명칭이 변경된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의 디지털정보전자공학전공, 컴퓨터·로봇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분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3) 졸업최저이수학점표는 전 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졸업요건이 강화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폐지된 야간의 경영학부, 방송언론광고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의 3개 학부는 2004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고, 복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2004학년도 이전 야간의 경영학부, 방송언론광고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입학자가 2005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주간의 경영학부, 방송언론광고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소속으로 보며 이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학생이 야간의 타학부로 전부(과)를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하며 기존의 야간학부전공으로 수업을 원할 경우 야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③(학부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건설환경공학부 바이오환경학전공 재적생은 2005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환경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한약자원개발학과 재적생은 2005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한약재개발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생활체육학부의 무도경영학전공 재적생은 2005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태권도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58조, 제62조는 2004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3) 졸업최저이수학점표는 전 학년에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사항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05년 입학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08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 ③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영학부
    - 가. 경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국제무역학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건설환경공학부
    - 가. 건설환경공학부 사회기반공학전공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학부에서 분리된 철도 건설환경공학과와 재적생으로 본다.
    - 나.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이 복학할 경우 소속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공학,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이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관광정보계획학부의 도시계획학 환경계획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2)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이 복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복학자 :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부, 관광조경학과,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중 선택.
        -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복학자 : 건축학부, 관광조경학과, 철도건설환경공학과, 관광정보·계획학부 중 선택.
      - 3) 2004, 2005학년도 입학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이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 관광정보·계획학부 및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중 선택.
    - 다. 단, 건설환경공학부의 재적생 중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공학전공 또는 환경공학전공을 복학 전에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정보·계획학부의 도시계획학, 환경계획학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3. 건축학부
    - 가. 건축학부 재적생이 복학할 경우 소속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은 실내건축학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건축학전공과 실내건축학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 다만,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축공학전공을 복학전에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이 경우 건축학부에서 지정하여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4.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가. 2006학년도부터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의 멀티미디어공학전공은 폐지한다.

나.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재적생 중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디지털콘텐츠학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컴퓨터공학전공은 디지털콘텐츠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은 멀티미디어시스템학전공의 각 재적생으로 본다.

5.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가. 컴퓨터 정보시스템공학부의 디지털정보전자공학전공과 컴퓨터·로봇공학전공은 컴퓨터정보전자공학과와 단일학과로 한다.

나.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재적생 중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학부명칭이 변경된 컴퓨터정보전자공학과와 재적생으로 본다.

6. 생활체육학부

가. 생활체육학부 재적생중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2006학년도부터 레저스포츠학전공은 생활체육학과로, 태권도학전공은 태권도학부 태권도경영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나. 전공을 배정하지 않은 재적생이 2006학년도 이후에 복학하는 경우 생활체육학과와 태권도학부 중에서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④(학교기업설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중 제63조의 3내지 제63조의 5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학부(과)별 입학정원'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문예창작학과 재적생은 2007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한국어문학과와 재적생으로 본다. 단, 200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2. 디지털콘텐츠학부의 재적생은 2007학년도부터 학부명칭이 변경된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디지털콘텐츠공학전공은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시스템학전공은 정보통신공학전공의 각 재적생으로 본다.

3. 미디어아트학부의 재적생이 2007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에는 조형예술학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시각디자인학전공, 디지털영상학전공은 각각 명칭이 변경된 학부의 시각디자인학전공, 사진영상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4. 태권도대학

- 가. 태권도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단과대학명칭이 변경된 체육대학으로 한다.
- 나. 태권도학부 재적생은 2007학년도부터 소속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태권도학부의 태권도경영학전공과 태권도외교학전공은 단일학과인 태권도학과로 한다.
  - 2) 태권도학부 재적생은 태권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은 2007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학부(과)별 입학정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경찰법학부 부동산개발학전공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부동산건설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2. 컴퓨터정보전자공학과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학과명칭이 변경된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3. 건축학부
    - 가. 건축학부 재적생이 복학할 경우 소속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실내건축학전공 재적생이 200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전공명칭이 변경된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2) 다만,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0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실내건축학전공 재적생과 전공배정을 받지않은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입학한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내건축학전공을 복학 전에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이 경우 건축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과 건축학전공에서 지정하여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면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조형예술학부
    - 가. 조형예술학부 재적생이 200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에는 사진영상디자인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사진영상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은 각각 명칭이 변경된 학부의 사진영상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나. 미디어아트학부 디지털영상학전공의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사진영상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학부(과)별 입학정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에 따른 경과조치) 제62조 개정조항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7년 3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학부 실내건축학 전공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전공명칭이 변경된 건축공학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1. 관광학부

가. 관광학부(주간)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소속을 다음과 같이 본다.

- 1) 관광경영학전공 재적생은 관광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2) 관광개발학전공 재적생은 관광·레저개발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3) 호텔경영학전공 재적생은 호텔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4) 외식·조리학전공 재적생은 외식·조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5)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관광학부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에는 관광경영학과, 관광·레저개발학과, 호텔경영학과, 외식·조리학과 중에서 소속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나.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야간)과 외식·조리학전공(야간)은 2009학년도부터 호텔·조리학과(야간)의 단일학과로 한다.

다. 관광학부(야간)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소속을 다음과 같이 본다.

- 1)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관광학부(야간)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에는 단일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호텔·조리학과(야간)의 재적생으로 본다.
- 2)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야간) 또는 외식·조리학전공(야간)을 복학 전에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텔·조리학과(야간)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호텔·조리학과(야간) 재적생은 호텔경영학전공(주간) 또는 외식·조리학전공(주간)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2. 관광정보·계획학부, 에너지관리학과

가. 관광정보·계획학부 환경계획학전공과 에너지관리학과는 2009학년도부터 환경에너지학과(자연계열)의 단일학과로 한다.

나. 관광정보·계획학과와 에너지관리학과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소속을 다음과 같이 본다.

- 1) 관광정보학전공 재적생은 관광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2) 도시계획학전공 재적생은 국토·도시계획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3)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관광정보·계획학부 환경계획학전공 재적생 및 에너지관리학과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에 환경에너지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4)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관광정보·계획학부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에는 관광정보학과, 국토·도시계획학과, 환경에너지학과 중에서 소속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 5) 다만,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환경계획학전공 재적생 및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관광정보·계획학부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관광정보·계획학부 환경계획학을 복학 전에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에너지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관광외국어학부

가. 관광외국어학부 영어전공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학부에서 분리된 국제관광영어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관광외국어학부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관광외국어학부 일어전공, 중국어전공, 국제관광영어과로 소속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 4. 경영학부

가.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과 세무회계정보학전공은 2009학년도부터 경영학부

경영정보회계학전공의 단일전공으로 한다.

나.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및 세무회계정보학전공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경영학부 경영정보회계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경영학부 재적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 할 경우 경영학부 경영정보회계학전공, 국제무역학전공, 경영학전공으로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5. 관광조경학과

관광조경학과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조경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6. 군정보·사관학과

군정보·사관학과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군정보사관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7. 방송언론광고학부

가. 방송언론광고학부 광고홍보학전공과 방송언론학전공은 2009학년도부터 광고홍보미디어학과의 단일학과로 한다.

나. 방송언론광고학부 재적생 중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단일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광고홍보미디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8. 사진영상디자인학부

가. 사진영상디자인학부 사진영상학전공과 시각디자인학전공은 2009학년도부터 사진영상디자인학과의 단일학과로 한다.

나. 사진영상디자인학부 재적생 중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단일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진영상디자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학부(과)별 입학정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레저개발학과

관광·레저개발학과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학과명칭이 변경된 관광레저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컨벤션·이벤트학과

컨벤션·이벤트학과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학과명칭이 변경된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호텔·조리학과(야간)

가. 2010학년도부터 폐지되는 호텔·조리학과(야간)는 2009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2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나. 호텔·조리학과(야간) 재적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소속을 다음과 같이 본다.

1)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호텔·조리학과 재적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에는 호텔경영학과(야간)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식·조리학과(주간) 및 야간의 타 학부(과)로 전부(과)를 할 수 있고, 주간의 외식·조리학과를 선택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호텔·조리학과 재적생이 2010학년도 이하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하여 기존의 야간학과 수업을 원할 경우 야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4.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과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국토·도시계획학과

가.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국토·도시계획학과(인문계열) 재적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관광도시계획학과(공학계열) 재적생을 본다.

나. 다만,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국토·도시계획학과 재적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토·도시계획학과를 복학 전에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도시계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한약재개발학과

한약재개발학과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한약자원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50조 제1항의 특수체육교육학과 부전공 이수제한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별표2)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은 2008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3. '(별표3)졸업최저 이수 학점표'는 전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단 '(별표1)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③(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 가.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재적생중 2009학년에 입학한 입학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관광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경영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관광외국어학부
    - 가. 관광외국어학부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소속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일어전공 재적생은 관광일어과 재적생으로 본다.
      - 2) 중국어전공 재적생은 관광통상중국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3)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관광외국어학부 재적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관광일어과, 관광통상중국어학과 중에서 소속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3. 문화재학부
    - 가. 전공을 배정받은 문화재학부 재적생 중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소속을 다음과 같이 본다.
      - 1) 문화재학전공 재적생은 문화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2) 문화재보존학전공 재적생은 문화재보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문화재학부 재적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이하에 복학할 경우 문화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중에서 소속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4. 광고홍보미디어학과
    - 가. 광고홍보미디어학과 재적생 중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나.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광고홍보미디어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사진영상미디어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경영학부

가. 경영학부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소속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영정보회계학전공 재적생은 글로벌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2) 국제무역학전공 재적생은 국제무역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3) 경영학전공 재적생은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4)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경영학부 재적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이하에 복학할 경우 글로벌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학과 중에서 소속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6. 경찰법학부

가. 경찰법학부 재적생 중 2009학년도 입학생은 단일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경찰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나. 경찰법학부 재적생중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경찰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 다만, 전공배정을 받은 재적생이 배정받은 학적유지를 희망할 경우 경찰법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학전공, 경찰학전공, 부동산건설링전공중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법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사진영상디자인학과

가. 사진영상디자인학과 재적생중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학과 분리된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중에서 1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나.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진영상디자인학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시각디자인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노인복지학과

가. 노인복지학과 재적생중 2009학년에 입학한 입학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사회복지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노인복지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행정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건축학부

가. 건축학부 재적생 중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단일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건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나. 다만, 전공배정을 받은 재적생이 배정받은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 건축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재적생이 희망할 경우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 중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0.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가.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재적생중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단일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컴퓨터정보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나. 다만, 전공배정을 받은 재적생이 배정받은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 컴퓨터정보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재적생이 희망할 경우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중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정보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52조 수료학점 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별표 3) 졸업최저 이수 학점표는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전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경우에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 '(별표1)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통상중국어학과

관광통상중국어학과 재적생은 2011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관광중국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광고홍보이벤트학과

가.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재적생 중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1학년도 입학자

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관광홍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광고홍보이벤트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홍보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국제무역학과

국제무역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들은 2011학년도부터 무역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재적생 중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1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사진영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진영상미디어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영화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글로벌경영학과

가. 글로벌경영학과 재적생 중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1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단일 학과로 통합된 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나.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글로벌경영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3) 졸업최저 이수 학점표는 2010학년도 후기(201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전 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경우에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3) 졸업최저이수학점표’의 적용은 201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2년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학부(과)별 입학정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경영학과, 관광레저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레저학과, 호텔경영학과 재적생은 2012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관광레저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호텔경영학과(야간)  
호텔경영학과(야간) 재적생은 2012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관광학부(야간) 호텔경  
영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외식·조리학과, 관광정보학과, 관광홍보학과  
외식·조리학과, 관광정보학과, 관광홍보학과 재적생은 2012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관광·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학전공, 관광정보학전공, 관광홍보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4. 관광일어과, 관광중국어학과  
관광일어과, 관광중국어학과 재적생은 2012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관광외국어학  
부 관광일어전공, 관광중국어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1. 무역학과  
무역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  
에는 무역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  
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보존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문화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문화재보존학과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조경학과

조경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조경도시개발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조경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경도시개발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관광도시계획학과

관광도시계획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조경도시개발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광도시계획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경도시개발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건축학과

건축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건축·토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건축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토목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6.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건축·토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철도건설환경공학과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토목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7.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컴퓨터정보공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태권도·생활체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태권도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권도·생활체육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태권도·생활체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생활체육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권도·생활체육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한약자원학과

가. 2012학년도부터 통합되어 학과 명칭이 없어지는 한약자원학과는 2011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4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나. 한약자원학과 재적생중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관광·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한약자원학과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학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과 모집정지에 따른 경과조치)

1. 국제관광영어과

2012학년도부터 모집정지가 되는 국제관광영어과는 2011학년도에 입학한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4학년도까지 존속한다.

## 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012학년도부터 모집정지가 되는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2011학년도에 입학한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4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후 발생하는 재적생은 타 학부(과)로 학년 및 횟수를 반영하지 않고 전과를 허가 하거나 또는 특별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 할 수 있다.

## 3. 사진영화학과

2012학년도부터 모집정지가 되는 사진영화학과는 2011학년도에 입학한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4학년도까지 존속하며, 2014학년도 이후 발생하는 재적생은 타 학부(과)로 학년 및 횟수를 반영하지 않고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2012학년도에 신설되는 공연영상학과로 전과 시에는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무대공연예술학과

2012학년도부터 모집정지가 되는 무대공연예술학과는 2011학년도에 입학한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4학년도까지 존속하며, 2014학년도 이후 발생하는 재적생은 타 학부(과)로 학년 및 횟수를 반영하지 않고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2012학년도에 신설되는 공연영상학과로 전과 시에는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3) 졸업취제 이수 학점표는 2011학년도 전기(2012년 2월) 졸업 예정자부터 전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경우에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2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학칙 제·개정 보고 폐지」 로 제81조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전공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학부

가. 관광학부(주간)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소속을 다음과 같이 본다.

1) 관광경영학전공 재적생은 관광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관광레저학전공 재적생은 관광레저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호텔경영학전공(주) 재적생은 호텔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야) 재적생은 호텔경영학과(야) 재적생으로 본다.

2. 관광·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학전공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관광외국어학부 관광일어전공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관광일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GU International School(국제학부)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국제관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경찰법학과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사이버수사경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공연영상학과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공연뮤지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7. 태권도·생활체육학과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스포츠어드벤처·태권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8. 관광·외식조리학부 관광홍보학전공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관광홍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9. 관광·외식조리학부 관광정보학전공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관광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10. 관광외국어학부 관광중국어전공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관광중국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학부(과) 전공 모집정지에 따른 경과조치)

1. 2013학년도부터 모집정지 되는 다음 학과의 재적생은 2012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5학년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야) → 호텔경영학과(야)
  - 나. 관광·외식조리학부 관광홍보학전공 → 관광홍보학과
  - 다. 관광·외식조리학부 관광정보학전공 → 관광정보학과
  - 라. 관광외국어학부 관광중국어전공 → 관광중국어학과
  - 마. 경영학과
  - 바. 시각디자인학과
  - 사. 사회복지행정학과(야)
  - 아. 조경도시개발학과
  - 자. 건축·토목학과
  - 차.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2. 모집정지 된 학과의 재학생은 2013학년도부터 타학부(과)로 학년 및 횟수 등 자격 제한 없이 전부(과)를 허가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학칙 제7조(수업년한)은 2013학년도 졸업자(2014년 2월)부터 적용한다.

③(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1. 공연뮤지컬학과

공연뮤지컬학과 재적생은 2014학년도부터 공연방송연예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방송연예학과

방송연예학과 재적생은 2014학년도부터 공연방송연예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의료과학과

의료과학과 재적생은 2014학년도부터 의료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언어청각치료학과

가. 언어청각치료학과 재적생중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  
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의료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유  
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어청각치료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  
보건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학년도부터 통합되어 학과명칭이 없어지는 언어청각치료학과는 2013학년도에 입  
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6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5. 호흡기치료학과

호흡기치료학과 재적생은 2014학년도부터 의료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학과 모집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1. 2014학년도부터 모집이 중지 되는 다음학과의 재적생은 2013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  
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6학년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광레저학과

나. 관광일어학과

다. 국제관광학과

라. 사이버수사경찰학과

2. 모집중지 된 학과의 재학생은 2014학년도부터 타 학부(과)로 학년 및 학수 등 자격  
제한없이 전부(과)를 허가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학부의 푸드스타일리스트 전공 재적생은 2015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푸드스타일링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뷰티·패션디자인학과

뷰티·패션디자인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애완동식물보호학과

애완동식물보호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동물·자연보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스포츠어드벤처·태권도학과

스포츠어드벤처·태권도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태권도·운동처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에너지플랜트학과

에너지플랜트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신재생에너지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7. 의료보건학과

의료보건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보건의료관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1.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재적생 중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5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실용음악공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실용음악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용음악공연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공연방송연예학과

공연방송연예학과 재적생 중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5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실용음악공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연방송연예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용음악공연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③(모집중지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5년 12월 8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② 이 학칙중 제52조 2항 및 (별표3)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모집중지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사이버수사경찰학과

2014학년도부터 모집중지된 사이버수사경찰학과의 재적생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경찰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학과 모집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신재생에너지학과

가. 2016학년도부터 모집이 중지되는 신재생에너지학과의 재적생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8학년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모집중지된 신재생에너지학과의 재적생은 2016학년도부터 타학부(과)로 학년 및 횟수 등 자격 제한없이 전부(과)를 허가하며,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⑤(학부(과)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외식·조리학부는 2016학년도부터 인문사회계열에서 자연계열로 변경한다

2.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식·조리학부 재적생은 2016학년도부터 자연계열의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5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47조 제3항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②(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재적생 중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7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항공·관광경영학부 관광사업경영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광경영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관광경영학부 관광사업경영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재적생 중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7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항공·관광경영학부 항공운항서비스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항공운항서비스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관광경영학부 항공운항서비스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문화재학과

문화재학과 재적생 중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7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고고인류미술사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문화재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고인류미술사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사회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재적생은 2017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5. 태권도·운동처방학과

태권도·운동처방학과 재적생은 2017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태권도·생활체육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6. 군정보사관학과

군정보사관학과 재적생은 2017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군사관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7. 방재안전학과

방재안전학과 재적생은 2017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원자력방재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③(학과 모집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 1. 동물·자연보호학과

가. 2017학년도부터 모집이 중지되는 동물·자연보호학과의 재적생은 2016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9학년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모집중지된 동물·자연보호학과의 재적생은 2017학년도부터 타학부(과)로 학년 및 횟수 등 자격 제한없이 전부(과)를 허가하며,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외식·조리학부는 2018학년도부터 자연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로 변경한다
2.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식·조리학부 재적생은 2018학년도부터 인문계열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외식·조리학부의 건강·미용뷰티조리전공은 폐지한다.
2. 고고인류미술사학과  
고고인류미술사학과의 재적생은 2018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된 문화재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실용음악공연학과  
실용음악공연학과 재적생 중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실용음악·공연예술학부의 실용음악전공 또는 공연예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실용음악공연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용음악·공연예술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재적생 중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융·복합시각예술디자인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시각예술디자인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복합시각예술디자인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태권도·생활체육학과  
태권도·생활체육학과 재적생 중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태권도·생활체육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태권도·생활체육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권도·생활체육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환경에너지학과  
환경에너지학과 재적생중 중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환경에너지·방재학부 환경에너지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환경에너지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에너지·방재학부 환경에너지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원자력방재학과

원자력방재학과 재적생중 중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 이하에 복학할 경우 명칭이 변경된 환경에너지·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학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자력방재학과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에너지·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학과 모집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시각디자인학과

가. 모집중지된 시각디자인학과의 재적생은 시각예술디자인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9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학과 모집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1. 2019학년도부터 모집이 중지되는 문화관광산업학과의 재적생은 2018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21학년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2019학년도부터 모집이 중지되는 뷰티미용학과의 재적생은 2018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21학년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학과별 입학정원

**2019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입학정원	계열		
문화관광대학	항공·관광경영학부	관광사업경영전공 항공운항서비스전공	70	인문사회	
	호텔경영학과		60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80		
		외식산업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제과·제빵전공			
		전통발효마스터전공			
문화재학과		40			
보건의료관광학과		30	보건		
예술체육대학	실용음악·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60	예·체능	
		공연예술전공			
		악기제작전공			
	융·복합시각예술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60		
		패션·문화디자인전공			
		바이오·뷰티디자인전공			
태권도·생활체육학부	태권도전공	80			
	합기도전공				
	축구전공				
	생활체육전공				
특수체육교육학과		7	사범계		
보건복지산업대학	사회복지학과		40	인문사회	
	간호학과		40	보건	
	환경에너지·방재학부	환경에너지전공	60	자연	
		원자력시설관리전공			
		소방방재전공			
군사관학과		35			
총 계			762		

### 2018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입학정원	계열	
문화관광대학	항공·관광경영학부	관광사업경영전공	70	인문사회
		항공운항서비스전공		
	호텔경영학과		55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70	
		외식산업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제과·제빵전공		
		전통발효마스터전공		
문화관광산업학과		30		
문화재학과		30		
보건의료관광학과		30	보건	
예술체육대학	실용음악·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50	예·체능
		공연예술전공		
		악기제작전공		
	음·복합시각예술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50	
		패션·문화디자인전공		
		바이오·뷰티디자인전공		
	뷰티미용학과		30	
태권도·생활체육학부	태권도전공	80		
	합기도전공			
	축구전공			
	생활체육전공			
특수체육교육학과		7	사범계	
보건복지산업대학	사회복지학과		35	인문사회
	간호학과		40	보건
	환경에너지·방재학부	환경에너지전공	50	자연
		원자력시설관리전공		
		소방방재전공		
군사관학과		35		
총 계		762		

### 2017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입학정원	계열
관광대학	항공·관광경영학부	관광사업경영전공	72	인문사회
		항공운항서비스전공		
	호텔경영학과		80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00	자연
		외식산업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제과·제빵전공				
건강·미용뷰티조리전공				
보건의료관광학과		40	보건	
문화예술대학	고고인류미술사학과		40	인문사회
	실용음악공연학과		40	예·체능
	시각예술디자인학과		40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40	인문사회
	간호학과		40	보건
	태권도·생활체육학과		40	예·체능
	특수체육교육학과		10	사범계
산업기술대학	환경에너지학과		40	자연
	군사관학과		40	
	원자력방재학과		40	
총 계			762	

**2016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입학정원	계열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60	인문사회	
	호텔경영학과	100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35	자연
		외식산업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항공운항서비스학과	30	인문사회	
보건의료관광학과	30	보건		
문화예술대학	문화재학과	30	인문사회	
	실용음악공연학과	30	예·체능	
	시각예술디자인학과	25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행정학과	32	인문사회	
	간호학과	40	보건	
	동물·자연보호학과	25	자연	
	태권도·운동처방학과	30	예·체능	
	특수체육교육학과	10	사범계	
산업기술대학	환경에너지학과	30	자연	
	군정보서관학과	30		
	방재안전학과	25		
<b>총 계</b>		762		

### 2015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입학정원	계열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60	인문사회	
	호텔경영학과	115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40
		외식산업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항공운항서비스학과	25		
보건의료관광학과	20	보건		
문화예술대학	문화재학과	24	인문사회	
	실용음악공연학과	40	예·체능	
	시각예술디자인학과	15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행정학과	35	인문사회	
	간호학과	40	보건	
	동물·자연보호학과	25	자연	
	태권도·운동처방학과	32	예·체능	
	특수체육교육학과	10	사범계	
산업기술대학	환경에너지학과	24	자연	
	군정보서관학과	33		
	신재생에너지학과	10		
	방재안전학과	14		
<b>총 계</b>		762		

### 2014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입학정원	계열
관광대학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90	인문사회
		외식산업전공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관광경영학과	94		
	호텔경영학과	155		
항공서비스학과	40			
문화예술대학	문화재학과	40	인문사회	
	실용음악학과	40	예·체능	
	공연방송연예학과	35		
	뷰티·패션디자인학과	35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행정학과	45	인문사회	
	간호학과	40	보건	
	의료보건학과	40		
	애완동물보호학과	35	자연	
	스포츠어드벤처·태권도학과	40	예·체능	
	특수체육교육학과	10	사범계	
산업기술대학	환경에너지학과	40	자연	
	군정보서관학과	45		
	에너지플랜트학과	35		
<b>총 계</b>			<b>1,059</b>	

### 2013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입학정원	계열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90	인문 사회	
	관광레저학과	40		
	호텔경영학과	186		
	관광일어학과	38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		272
		외식산업		
		푸드스타일리스트		
국제관광학과	39			
항공서비스학과	50			
사회문화대학	문화재학과	49	인문 사회	
	사이버수사경찰학과	50		
예술대학	공연뮤지컬학과	34	예능	
	실용음악학과	60		
	방송연예학과	35		
	뷰티·패션디자인학과	40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행정학과	49	인문사회	
	간호학과	40	보건	
	의료과학과	34		
	언어청각치료학과	40		
	호흡기치료학과	35		
	애완동물보호학과	35	자연	
산업기술대학	환경에너지학과	40	자연	
	군정보서관학과	40		
	에너지플랜트학과	40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학과	10	예·체능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어드벤처·태권도학과	39		
총 계		1,385		

### 2012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 과		'12 입학 정원	계열
관 광 대 학	관 광 학 부	관 광 경 영 학	314	인 문 · 사회
		관 광 레 지 학		
		호 텔 경 영 학		
		호 텔 경 영 학 (야)		
	관 광 · 외 식 조 리 학 부	외 식 · 조 리 학	471	
		관 광 흥 보 학		
관 광 정 보 학				
관 광 외 국 어 대 학	관 광 외 국 어 학 부	관 광 일 어	68	
		관 광 중 국 어		
	GU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부)	International Hospitality Management	40	
		International Culinary Arts & Science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Professional English				
사 회 문 화 대 학	문 화 재 학 과	53	예 체 능	
	경 영 학 과	30		
	경 찰 법 학 과	35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5		
	공 연 영 상 학 과	20		
보 건 지 대 학	사 회 복 지 행 정 학 과	35	인 문 · 사회	
	사 회 복 지 행 정 학 과 (야)	15		
	간 호 학 과	40	보 건	
	의 료 과 학 과	20		
산 업 기 대 학	조 경 도 시 개 발 학 과	33	자 연	
	환 경 에 너 지 학 과	25		
	군 정 보 사 관 학 과	71		
	건 축 · 토 목 학 과	30	공 학	
	전 기 에 너 지 컴 퓨 터 공 학 과	30		
사 범 대 학	특 수 체 육 교 육 학 과	20	예 체 능	
스 포 츠 과 학 대 학	태 권 도 · 생 활 체 육 학 과	25		
<b>총 계</b>			1,416	

### 2011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 과	'11 입학정원	계열	
관 광 대 학	관광경영학과	94	인문 · 사회	
	관광레저학과	33		
	호텔경영학과	126		
	외식·조리학과	265		
	관광정보학과	41		
	호텔경영학과(야)	16		
관 광 외국어 대 학	국제관광영어과	50		
	관광일어과	52		
	관광중국어학과	3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0		
사 회 문 화 대 학	문화재학과	33		예·체
	문화재보존학과	32		
	관광홍보학과	25		
	무역학과	25		
	경영학과	32		
	경찰법학과	45		
	사진영화학과	25		
	시각디자인학과	30		
	무대공연예술학과	20		
	보 건 지 대 학	사회복지행정학과	45	
사회복지행정학과(야)		15	보건	
간호학과		40		
한약자원학과		30		
산 기 대 학	조경학과	33	자연	
	환경에너지학과	29		
	군정보서관학과	35		
	관광도시계획학과	25	공학	
	건축학과	25		
	철도건설환경공학과	25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	25		
	컴퓨터정보공학과	25		
사범 대 학	특수체육교육학과	20	예·체	
스 포 츠 과 학 대 학	생활체육학과	25		
	태권도학과	25		
<b>총 계</b>		1,416		

### 2010학년도 학부(과)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 과	10'입학정원	계열
관 광 대 학	관광경영학과	100	인문 · 사회
	관광레저학과	30	
	호텔경영학과	170	
	외식·조리학과	170	
	관광정보학과	50	
	호텔경영학과(야)	16	
관 광 외국어 대 학	국제관광영어과	40	
	관광일어과	40	
	관광통상중국어학과	3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0	
사 회 문 화 대 학	문화재학과	30	
	문화재보존학과	30	
	광고홍보이벤트학과	30	
	글로벌경영학과	30	
	국제무역학과	30	
	경영학과	30	
	경찰법학과	60	
	사진영상미디어학과	30	
	시각디자인학과	30	
	보 건 지 복 대 학	사회복지행정학과	45
사회복지행정학과(야)		15	보건
간호학과		40	
한약자원학과		30	
산 업 기 대 학	조경학과	30	자연
	환경에너지학과	30	
	군정보서관학과	30	
	관광도시계획학과	30	
	건축학과	30	공학
	철도건설환경공학과의	30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	30	
	컴퓨터정보공학과	30	
사범 대 학	특수체육교육학과	20	예체
스 포 츠 과 학 대 학	생활체육학과	30	
	태권도학과	30	
<b>총 계</b>		1,416	

(별표 2) <개정 2010.3.1, 2011.3.1, 2012.3.1, 2013.3.1, 2014.3.1., 2015.3.1., 2017.3.1., 2018.3.1.>

###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학 위 종 별	학 과 및 전 공
경 영 학 사	관광경영학과(전공), 호텔경영학과(전공), 외식·조리학과(전공), 호텔·조리학과, 관광·레저개발학과, 관광개발학전공, 컨벤션·이벤트학과, 경영정보학전공, 경영정보회계학전공, 회계학전공, 세무회계정보학전공, 부동산건설팅전공, 부동산개발학전공, 국제무역학과(전공), 경영학과(전공), 글로벌경영학과, 무역학과, 관광정보학과(전공), 국제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외식조리전공, 외식산업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제과·제빵전공, 건강·미용뷰티조리전공, International Hospitality Management, International Culinary Arts & Science,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전통발효마스터전공 연계전공: 문화관광정보학전공, 예술정보매체학전공, 스포츠산업경영학전공, 호텔회계정보학전공, 관광홍보학전공, 문화콘텐츠산업학전공, 영미문화관광학전공, 일본문화관광학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중국비즈니스학전공
관 광 학 사	관광레저학과(전공),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관광사업경영전공, 항공운항서비스전공, 문화관광산업학과
행 정 학 사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행정학사	사회복지행정학과
노인복지학사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경찰법학사	경찰법학과, 사이버수사경찰학과
경찰행정학사	경찰학전공
법 학 사	법학전공
문 학 사	관광영어과, 영어전공, 국제관광영어과, 관광일어과(전공), 일어전공, 중국어전공, 문화재학과(전공), 문화재보존학전공, 광고홍보학과(전공), 광고홍보미디어학과, 방송언론학전공, 문예창작학과, 한국어문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관광통상중국어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관광중국어학과, 관광홍보학과(전공), 관광중국어전공, Professional English, 관광일어학과, 고고인류미술사학과 연계전공: 미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문화재보존학사	문화재보존학과
도시계획학사	도시계획학전공, 국토·도시계획학과
환경학사	환경계획학전공
공 학 사	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사회기반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바이오환경학전공, 컴퓨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디지털정보전자공학전공, 컴퓨터로봇공학전공, 전기에너지전자공학학과, 철도건설환경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건축공학전공, 조경도시개발학과, 건축·토목학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관광도시계획학과 연계전공: 리조트개발계획전공, 도시환경설계전공
건 축 학 사	건축학과(전공), 건축학전공
조 경 학 사	관광조경학과, 조경학과
이 학 사	한약재개발학과, 에너지관리학과, 군정보서관학과, 환경에너지학과(전공), 한약자원학과, 의료과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호흡기치료학과, 애완동물보호학과, 에너지플랜트학과, 의료보건학과, 동물·자연보호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보건의료관광학과, 군사학과, 원자력방재학과, 원자력시설관리전공, 소방방재전공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체 육 학 사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전공, 특수체육교육학과, 생활체육학과(전공), 태권도경영학전공, 태권도학과(전공), 태권도·생활체육학과, 스포츠어드벤처·태권도학과, 태권도·운동처방학과, 합기도전공, 축구전공
미 용 학 사	뷰티미용학과
미 술 학 사	디지털영상학전공,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전공, 사진영상학전공, 사진영상디자인학과,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시각디자인학과(전공), 사진영화학과, 시각예술디자인학과, 패션·문화디자인전공, 바이오·뷰티디자인전공
연극영화학사	무대공연예술학과, 공연영상학과
예술학사	공연무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전공), 방송연예학과, 뷰티·패션디자인학과, 공연방송연예학과, 실용음악공연학과, 공연예술전공, 악기제작전공

(별표 3) <개정 2003.3.1., 2003.7.1., 2004.3.1., 2004.4.15, 2005.3.1, 2007.3.1, 2008.3.1, 2009.3.1, 2010.3.1, 2011.3.1, 2011.4.13, 2012.3.1., 2013.3.1., 2014.3.1., 2015.3.1., 2016.3.1., 2017.3.1., 2018.3.1>

### 졸업최저이수학점표

학부(과)		졸업최저 이수학점	교양최저 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비 고
				복수전공 이수자	부전공 이수자	계	
항공·관광 경영학부	관광사업경영전공	130	39	42	50	60	
	항공운항서비스전공	130	39	42	50	60	
호텔경영학과		130	39	42	50	60	
외식·조 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30	39	42	50	60	
	외식산업전공	130	39	42	50	60	
	푸드스타일링전공	130	39	42	50	60	
	제과·제빵전공	130	39	42	50	60	
	전통발효마스터전공	130	39	42	50	60	
문화관광산업학과		130	39	42	50	60	
문화재학과		130	39	42	50	60	
보건의료관광학과		130	39	42	50	60	
실용음악 · 공연예 술학부	실용음악전공	130	39	42	50	60	
	공연예술전공	130	39	42	50	60	
	악기제작전공	130	39	42	50	60	
융·복합시 각예술디자 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30	39	42	50	60	
	패션·문화디자인전공	130	39	42	50	60	
	바이오·뷰티디자인전공	130	39	42	50	60	
뷰티미용학과		130	39	42	50	60	
태권도· 생활체육 학부	태권도전공	130	39	42	50	60	
	합기도전공	130	39	42	50	60	
	축구전공	130	39	42	50	60	
	생활체육전공	130	39	42	50	60	
특수체육교육학과		130	39	42	50	60	
사회복지학과		130	39	42	50	60	
간호학과		140	30	-	50	100	
환경에너지·방재 학부	환경에너지전공	130	39	42	50	60	
	원자력시설관리전공	130	39	42	50	60	
	소방방재전공	130	39	42	50	60	
군사관학과		130	39	42	50	60	
연 계 전 공	문화관광정보학전공, 예술정보매체학전공, 스포츠산업경영학전공, 호텔회계정보학전공, 관광홍보학전공, 미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리조트개발설계전공, 도시환경설계전공, 문화콘텐츠산업학전공, 영미문화관광학전공, 일본문화관광학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중국비즈니스학전공, 에너지융복합서비스학전공				36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사회봉사 또는 글로벌리더십인증 1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편입학생은 별도로 이수할 필요 없음)							

**(별표 4) 학교기업**

가. 점선면체<신설2006.1.1><개정2007.12.1, 2010.10.1><폐지 2011.12.14>

나. G • G 투어<신설 2011.12.14>

학교기업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연계학과
G • G 투어	경북 경주시 태종로 188	여행사 및 유학원 업무 등	관광경영학과

**(별표 5) 등록금 반환금액 기준 <신설 2008.9.1>**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별표 6) 계절학기 수강료반환금액 기준(수업일수 15일기준)<신설 2008.9.1>  
<개정 2011.12.14>**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수강개시일 전일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일 부터 5일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개시일 5일 경과한 날부터 10일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개시일 1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  
(○○학전공, ○○학전공, ○○학부전  
공)을 이수하고 ○○학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경주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 수료증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학전공, ○○학전공, ○○부전공)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0 년 월 일

경주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 학사에 관한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관리 업무는 다른 규정에 정한 사항이 없으면 본 규정에 의한다.

## 제2장 등 록

제3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8학기를 등록하고 소정의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자,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 중 입학당시 만27세 이상인 자 및 본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본인 및 자녀,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한 자**, 시간제 등록생은 학점단위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개정 2005.3.1, 2009.6.1, 2010.3.1., 2014.3.1. 2016.03.14., **2019.01.01.**>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납부하지 아니함. 다만, 시간제등록생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2011.1.1>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③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년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3.1>

④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취득유예** 등으로 인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과목 개설에 따라 수강신청을 못하는 경우(0학점)에는 0원으로 등록 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개정 **2019.01.01.**>

## 제3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 제1절 휴학 · 복학

제4조(휴학의 종류) ①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휴학은 가정사정, 질병, 사고,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을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

③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 또는 일반

휴학 중인 자로서 입대휴학으로 변경한 자의 휴학을 말한다.

제5조(일반휴학의 절차) ①일반휴학의 신청기간은 매 학기 초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 하는 질병(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첨부), 사고 및 천재지변을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1>

②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3.1., 2014.9.23>

③<삭제 2006.3.1>

④재학중 휴학은 5회에 한하며, 1회의 휴학기간은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군 입대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3.3.1, 2010.12.1>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신 및 육아에 따른 휴학,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1>  
<개정 2017.3.1.>

⑥계속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휴학연기 1회는 휴학 1회로 한다. <신설 2003.3.1>

⑦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자퇴 또는 미복학)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동조 제4항의 휴학횟수에 한하여 휴학을 자동 연기 시킬 수 있다. <신설 2010.12.1>

제6조(입대휴학 절차) ①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대일 1주일 전까지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또는 교육소집통지서 사본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3.1., 2014.9.23>

②일반휴학 중에 입대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입대휴학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 복무기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2년 이내에서 군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

④입영 후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1주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3.1., 2014.9.23>

제7조(휴학의 취소)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휴학취소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3.1., 2014.9.23>

제8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 2009.12.1., 2011.3.1., 2014.9.23>

②군 복무중인 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3.1>

제9조(일반휴학자의 등록) ①미등록 휴학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금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

1. 총수업일수의 4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2. 총수업일수의 4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수업일수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을 대체 인정한다.
3. 총수업일수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총수업일수 3분의 2 이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에는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을 인정한다. <신설 2003.3.1><개정 2007.3.1, 2010.3.1>

- 제10조(입대휴학자의 등록) ①미등록 휴학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을 인정한다.
  - ③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되기 전에 휴학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3.1>
  - ④당해학기 내에 일반휴학을 하고 입대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와 총수업일수의 4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 일반휴학을 하고 휴학기간 내에 입대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 <개정 2004.3.1>
  - ⑤총수업일수의 4분의 1을 경과한 후 일반휴학을 하고 다음 학기에 입대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일반휴학자의 복학학기 대체 등록금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제2절 퇴학·제적

- 제11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상담 후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교무처, 학생처, 취·창업지원혁신센터 등과의 면담을 통한 14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과장과 부서장의 협의 후 숙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 2011.3.1., 2013.12.5., 2014.9.23., 2015.3.1, 2016.3.17., 2017.10.18>

- 제12조(제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7.3.1>
  2. 소정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7.3.1>
  3. 재학 중 연속 4회 또는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이중 학적을 가진 자
  5. 외국인 유학생의 제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3.1>
  - 6.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 <신설 2019.01.01.>**
- ②제적된 자에게는 제적사유를 명시하여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전부(과) · 전공변경

제13조(자격) ①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3.1>

②체육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부(과) 할 수 없다.

③주·야간 학부(과)의 상호 전부(과)는 여석(모집단위별 입학정원-재적생수) 범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3.1>

④<삭제 2003.3.1>

⑤특수체육교육학과 및 간호학과는 타 학부(과)와 상호 전부(과)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1><개정 2007.3.1, 2009.3.1>

제14조(시기) ①전부(과)는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는 것으로 제2학년 이상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 초 3주 이내에 실시하되, 해당 학부(과) 및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3.1, 2005.3.1, 2007.3.1, 2009.3.1, 2010.3.1, 2012.01.31, 2017.3.1>

②전공변경은 학기초 3주 이내에 실시하되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3.1>

제15조(절차) ①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학년초 10일 이내 지원서에 전·출입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3.1>

②지원자가 제14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성적의 평균평점순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3.1>

③ <삭제 2005.3.1>

④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전공변경원서를 전출·입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1, 2010.3.1, 2011.3.1>

제16조(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①전부(과) 전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 취득한 전입학부(과)의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3.1>

② 전부(과)를 허가받은 자는 전입학부(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장 재입학 및 편입학

### 제1절 재입학

제17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총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 할 수 있으며, 특수체육교육

학과 및 간호학과는 해당 학과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단, 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09.3.1>

② 재입학은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하되, 제적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한 자 중 학업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 한다.

③ 학부(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칙의 학부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를 준용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6.3.1.>

④ 모집이 중지된 학부(과)의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가 있는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3.1>

제18조(재입학 절차)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보증인이 연서한 재입학원서를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 2006.3.1>

② 지도교수는 면담 후 학업이수능력 및 수업태도 등을 고려한 소견내용과 재입학원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면 제청서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

③ 재학시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재입학이후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졸업요건 등은 신(편)입학 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6.3.1>

④ 재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7.3.1>

⑤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 할 경우에는 등록횟수가 많은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통산평균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03.7.1><개정 2007.3.1>

## 제2절 편입학

제19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에 허가한다. <개정 2007.3.1>

② 편입학전형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며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모집시마다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편입학전형은 서류심사, 전적 대학(교) 성적 및 대학별 고사성적(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험·실기고사, 신체검사 등)과 기타 전형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령에 의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 대학교와 협정에 의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정원 외로 해당 학과(전공)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3.1>

제20조(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는 학칙 제52조(수료학점)가 정하는 최소수료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

1. 제3학년에 편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전적대학(교)에서 취득

한 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신설 2010.3.1>

2. 제4학년에 편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졸업학점의 4분의 3을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신설 2010.3.1>
3. 제2학년에 편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졸업학점의 4분의 1을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신설 2010.3.1>

②편입학 학년에 따라 학부과별 교양최저 이수학점을 인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교양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3.1>

③전공과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신설 2010.3.1>

1. 3학년에 편입학한 자는 전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학년에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교)의 학과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1>
2. 건축학과에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의 학과와 건축학과의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학년에 편입학한 자는 30학점, 4학년에 편입학한 자는 60학점까지 전공으로 일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1>
3. 특수체육교육학과에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 개설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학점 이내에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직이론과목을 이수한 경우 과목수에 관계없이 모두 교직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1>
4. 협정된 외국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본교 개설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1>
5. 간호학과에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의 학과와 간호학과의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학년에 편입한 자는 30학점, 4학년에 편입한 자는 45학점까지 전공으로 일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1><개정 2013.3.1>
6. 경찰법학과 3학년에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 개설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1>

④제2항, 3항에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본교의 일반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1>

제21조(이수교과목 및 학점) 편입학한 자는 해당 학부(과)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제22조(학점인정절차 및 이수) ①편입학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취득학점을 근거로 전적대학의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일괄 인정한다. <개정 2009.8.1>

②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 재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8.1>

제23조 <삭제 2010.3.1>

## 제6장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및 전공 배정

### 제1절 교과과정

제24조(교육과정 편성) ①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부(과)장이 안을 작성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1.3.1., 2013.3.1>

③총장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과목 및 협정된 타 대학에서 개설하는 인터넷강의 교과목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④현장 인턴학습(이하“인턴학습”이라 한다)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개정 2004.6.1>

⑤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1>

⑥외부기관의 취업관련사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3.1>

제25조(교육과정 개편) ①교육과정의 개편은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 개편할 수 있다.

②제출된 교육과정 개편안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개편 내용이 경미할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교직과정 편성) ①교직과정은 교직과목과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으로 편성한다.

②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절 교과목 이수

제27조(교과목 이수) ①학년·학기별 교과목의 이수는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②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5.3.1>

③학기별 16주 이상 인턴학습을 이수한 자는 18학점을 인정하며, 최대 2학기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④외부기관의 취업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취업특강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8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1.3.1>

⑤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 전공,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0.3.1>

제28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양, 자유교양 등 구분별로 이수하여 별표1의 교양최저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제29조(전공과목)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표1의 전공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0조(석사과정 교과목이수) ①제4학년 학생으로 9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경우에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당 취득 기준 학점수의 범위 안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3.1>

②제1항에 의한 교과목의 취득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일반선택과목)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또는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

제31조의 2(이수구분변경) 복수전공·부전공·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구분을 복수전공·부전공·교직으로 변경한다. <신설 2010.3.1>

### 제3절 전공배정

제32조(시기 및 배정한도) 2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전공 배정은 학부의 희망에 따라 1학년말 또는 2학년말에 하되, 전공별 배정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3조(방법) 학부의 재학생은 전공희망원서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단, 기간 내 미제출자는 학부(과)장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09.12.1, 2010.3.1>

## 제7장 수업관리

### 제1절 수강신청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34조(수강신청 절차)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35조(신청학점)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36조(수강과목 변경)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37조(수강신청의 제한)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38조(재이수)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39조(수강신청의효력)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0조(폐강)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2절 수업관리(개정 2014.9.23.)**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1조(강의계획서)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2조(강의시간표 변경)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3조(교재선택)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4조(강의)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5조(특별강의)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6조(휴·결강 및 보강)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7조(사전보강)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8조(수업시간)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49조(출석)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50조(유고결석)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50조의 2(강의평가) 삭제<2015.3.1.>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3절 교원 책임시간

제51조(교원책임시간) ①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 등의 사유로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

③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하였을 때에는 책임시간이 적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교원책임시간 인정) 교원의 책임시간 인정시수의 산정은 학점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강의시간 배정) ①전임교원의 주 중 강의시간은 균등하게 배정한다.

②시간강사는 주당 3과목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

제54조(교외출강) ①교원이 타 학교, 기관 및 단체 등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출강허가를 받아야한다.<개정 2011.3.1>

②교외출강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보직교수교과목배정) 보직교수가 보직에서 해직되었을 때에는 보직 이전의 담당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6조(시간강사위촉) ①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과 담당교수의 책임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교과목의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각 학부(과)장은 시간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학기 강의시간표 작성 이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 2013.3.1>

③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강사료 지급) 강사료의 지급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장 시험 · 성적 · 특별학점인정 및 학사경고

### 제1절 시험

제58조(시험) ①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시험

가. 중간시험 : 매 학기 중간에 수업한 교과목의 이수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

나. 학기말시험 : 매 학기말에 수업한 교과목의 이수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

2. 수시시험 : 정기시험 외에 매 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 학습평가, 세미나평가 등을 포함한다.

3. 추가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4. 특별시험 :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특별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②중간시험을 수시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③실기, 실습 등의 학점은 평상시의 평가만으로써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제59조(추가시험)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 2013.3.1>

②교무처장이 추가시험을 허가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7일 이내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2013.3.1>

③추가시험에 의한 성적등급은 B<sup>+</sup>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절 성적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60조(성적 반영비율)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61조(성적평가 기준)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62조(군입대자의 성적)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62조의 2(자퇴자의 성적)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63조(성적공시 및 제출)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64조(성적정정)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65조(학점의 인정)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66조(성적의 취소)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67조(성적의 포기)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68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69조(평균평점)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69조의 2(성적관리)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3절 특별학점

제70조(특별학점 인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학점으로 관련 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다만, 각 호에서 동일종류는 1회만 인정한다. <개정 2008.3.1>

1. <삭제 2018.5.29>
  2. 본 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2단계(24주)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련 외국어 교과목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교과목에서 1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6.3.1, 2008.3.1, 2009.12.1, 2011.3.1>
  3. 전문대학이상의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를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관련 외국어 교과목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교과목에서 1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4.3.1, 2008.3.1>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공 또는 기초교양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2018.5.29>
  5. <삭제 2008.3.1>
  6. 신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비대학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경우 자유교양으로 1학점을 인정하며, 과목명은 대학입문으로 한다. 학점 인정은 입학 후에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3.1>
  7. 본 대학교 취·창업지원혁신센터에서 취업역량강화 특강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자유교양으로 2학점 또는 3학점을 인정하며, 과목명은 취업특강으로 한다. <신설 2011.3.1.><개정 2015.3.1>
  8.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Global 화랑 Academy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자유교양으로 2학점을 인정하며, 과목명은 글로벌화랑아카데미로 한다. <신설 2013.04.17>
- ②사회봉사활동 또는 글로벌리더십인증에 참여하여 소정의 기준에 도달한 자는 특별학점으로 자유교양 2학점까지 인정하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4.1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비영리공익법인 그리고 기업체,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연구소 등에서 소정의 연수활동을 이수한 자는 전공 또는 자유교양으로 1학점을 인정하며, 전공 1학점을 인정받고자하는 전공교수회의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1.1월(80시간) 이상 과정을 수료한자

2.과목명은 “현장연수”로 하며,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특별학점은 본 규정 제35조의 학기당 신청학점수에서 제외하며, 성적처리는 제94조제2항에 의한다.

⑤교양특별강좌에 참여하여 소정의 기준에 도달한 자는 특별학점으로 자유교양 3학점까지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4.13.>

⑥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이수과목을 전공 또는 자유교양 학점으로 인정하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 준칙에 따른다. <신설 2013.3.1.>

⑦본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자유교양으로 1학점을 인정하며, 과목명은 “창의인성캠프”로 한다<신설 2016.3.1.>

#### 제4절 학사경고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71조(학사경고)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72조(제적처분)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제73조(특별지도) 삭제<2015.3.1.>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

### 제9장 졸업논문

제74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논문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부(과)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자격증취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제75조(논문제출자격)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 포함)의 제출자격은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예정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

제76조(논문계획서제출) ①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4주 이내 논문계획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계획서는 학부(과)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7조(논문지도교수) ①학부(과)장은 당해 전공 전임교수 중에서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졸업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배정하고 그 현황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1, 2006.3.1, 2009.12.1>

②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졸업논문의 제출 서식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논문제출) 논문은 학부(과)에서 정한 소정기간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제79조(논문심사) ①<삭제 2006.3.1>

②학부(과)장은 소속 학부(과) 교원 중에서 심사위원 2인(지도교수 제외) 이상을 졸업논문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여 11월말(후기졸업자 5월말)까지 논문심사를 하고 그 사정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2009.12.1, 2010.3.1>

③논문의 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판정기준은 각 학부(과)장이 정한다.

④논문심사위원 배정 시 전임교원 2인 이하인 학부(과)인 경우 전임교원 부족인원은 기타교원, 당해학기 출강중인 시간강사 순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제80조(졸업종합시험) ①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있게 시험하여야 하며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시험의 시기 및 평가기준은 학부(과)별 교수회의에서 정하되 그 결과를 11월말(후기졸업자는 5월말)까지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제81조(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 ①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는 소속학부(과)장이 정한 발표일시, 장소, 절차 등에 따라 공개 발표하되 개별 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②지도교수의 배정 및 심사는 졸업논문에 준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제81조의 2(자격증 취득) ①학과별로 지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졸업논문 등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학과별 자격증의 종류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별도로 정하되,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신설 2010.12.1>

제82조(논문 등의 심사결과 조치) ①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논문을 재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인정하되 그 시기는 논문 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83조 <삭제2010.3.1>

## 제10장 복수전공

제84조(범위) ①모든 학부(과)의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개방한다. 단, 특수체육교육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한 하며, 간호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5.3.1, 2009.3.1>

②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운영 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9.3.1>

제85조(이수학점) ①복수전공 이수자는 별표1의 전공최저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복수전공 주임교수(학과장)가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0.3.1>

제86조(자격취득) ①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예정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인정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강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7.1, 2006.3.1, 2007.3.1, 2009.12.1, 2011.3.1>

②복수전공 사정은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하되 주전공 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복수전공 사정에 탈락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

③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졸업시 복수의 학위를 수여하고 학적부 및 학위증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 <개정 2007.3.1>

④주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복수전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1장 부전공

제87조(범위) 모든 학부(과)의 전공을 부전공할 수 있다. 단, 특수체육교육학과 및 간호학과는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다. <개정 2005.3.1, 2009.3.1>

제88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부전공이수자는 부전공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 2009.3.1, 2010.3.1, 2014.3.1.>

②<삭제 2010.3.1>

③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부전공 주임교수(학과장)가 하여야 한다.

제89조(자격취득) ①부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부전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예정학기 초 소정기간 내 부전공인정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12.1, 2011.3.1>

②부전공이수의 사정은 부전공 학부(과)에서 하되 주전공 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③부전공을 이수한 자는 학적부 및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 제12장 졸업요건 및 수료 학점

제90조(졸업요건) ①본 대학교의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8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3학년 1학기에 편입학한 자는 4학기 이상, 3학년 2학기에 편입학한 자는 3학기 이상, 4학년 1학기에 편입학한 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 2014.3.1.>
2. 졸업학점은 별표1의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및 전공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학기제를 이수한 자,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해당전공 인턴학습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학점을 전공최저이수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4.6.1, 2006.3.1., 2008.3.1., 2015.3.1>
3.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의 심사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4. 학부(과)별 별도의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별 졸업요건은 학부(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

②본 대학교의 조기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균평점이 4.30 이상인 자로서 상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 2014.3.1.>
2.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희망학기 개강이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3.1>

제90조의 2(**학사학위 취득유예**) ① 제90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복수전공, 교직이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원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학사학위 취득유예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09.12.1., 2010.12.1., **2019.01.01**>

②**학사학위 취득유예**는 4회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회의 **유예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재학년한 내에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9.01.01**>

③**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제3조 제2항을 적용한다.

<조신설 2003.7.1.>, <개정 **2019.01.01.**>

제91조(수료학점) ①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2016.3.1.>

1. 제1학년 수료: 33학점 이상 <개정 2010.3.1.>
2. 제2학년 수료: 65학점 이상 <개정 2010.3.1.>
3. 제3학년 수료: 98학점 이상 <개정 2010.3.1.>
4. 제4학년 수료: 130학점 이상 <개정 2010.3.1.>
5. 삭제 <신설 2004.3.1> <개정 2010.3.1., 2014.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의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

설 2016.3.1>

1. 제1학년 수료: 35학점 이상
2. 제2학년 수료: 70학점 이상
3. 제3학년 수료: 105학점 이상
4. 제4학년 수료: 140학점 이상

## 제13장 계절학기

제92조(개설) ①계절학기는 총장이 방학 중에 개설한다.

②계절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개강 3주일 전에 개설일자, 개설교과목, 수강요령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계절학기의 개설과목은 수강인원이 적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3.1>

제93조(수강학점) 계절학기의 수강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4조(성적평가 및 처리) ①성적평가는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16.3.1.>

②계절학기(하계 및 동계)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나 당해 학기 평균평점의 산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

제95조(수강료)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장 공개강좌

제96조(공개강좌개설) 교양,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요청이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7조(시행계획) 공개강좌의 성격에 따라 그 강좌를 시행하는 부서장은 강좌개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개강좌 개설 계획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

1. 공개강좌명 및 담당교수
2. 목적 또는 필요성
3.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4. 기간 및 강의시간표
5. 이용되는 교육시설
6. 수강생의 선발기준 및 자격
7. 이수사정 기준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98조(행정처리) 시행 부서장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이수증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0조(결과보고) 시행 부서장은 공개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

제101조(비용징수) 공개강좌 수강자에게 강좌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5장 학적부 관리

제102조(학적부관리) ①학적부는 전산으로 관리하되, 학사지원팀 책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09.12.1>

②시간제학생의 학적부는 별도로 관리한다.

제103조(기재사항정정)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등(초)본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 및 오기일 때는 신고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2010.3.1>

제104조(성적정리) <삭제 2006.3.1>

## 제16장 제증명서 발급

제105조(발급대상) 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본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6조(증명서구분)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학증명서 : 본교에 재학중인 자
2. 재적증명서 :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수료증명서 : 학년별 수료인정 학점을 취득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 당해 학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신청하고 등록을 필한 자
5. 졸업증명서 : 본교의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6. 휴학증명서 : 휴학중인 자
7. 성적증명서
8. 입학성적증명서
9. 학점이수증명서 : 시간제학생으로 학점을 이수한 자
10. 장학금수혜/비수혜증명서 : 장학금 수혜 또는 비수혜 사실이 있는 자
11. 등록금납입증명서 : 본교에 등록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7조(제증명서영문발급) 전조의 제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08조(발급신청) ①제증명서는 자동발급기로 발급한다.

②제증명서는 본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확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7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자는 제20조,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에 학과로 입학한 자가 학부로 복학할 경우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학과를 주전공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학부학생과 같이 전공배정을 희망할 경우 제32조, 제33조에 의할 수 있다.

2. 1998학년도 전공배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중 제13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91조 3, 4호는 199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중 제20조는 2000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에는 제29조, 제30조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공통교양”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부족한 교양학점은 “자유교양”을 이수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4.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공통교양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29조, 제32조, 제65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2호, 제4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20조는 200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1조의 단서는 200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별표1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제20조, 제21조의 단서는 200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3. 제65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2호, 제4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 복학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 별표1중 단일전공 이수자의 전공최저 이수학점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61조 제4항은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70조 제2항의 사회봉사 1학점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졸업최저이수학점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규정중 제9조, 제10조는 시행 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도 모두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제58조 및 제65조의 변경규정(통과시험 폐지)은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2월 28일까지의 휴학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 칙

학사에관한규정 2-1-2~20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1) 졸업최저이수학점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3) 졸업최저이수학점표는 전 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졸업요건이 강화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18조는 2004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1 졸업최저이수학점표는 전 학년에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사항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0조는 2007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13조 내지 제15조의 변경규정은 2008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제70조 제1항 1호의 H.S.K시험 6급 이상 자격 취득자의 학점 인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제90조의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87조의 특수체육교육학과 부전공 이수제한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2. '(별표 1) 졸업최저 이수 학점표'는 전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3조 제2호의 경우 2007학년도 이후 편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91조 수료학점 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2. (별표 3) 졸업최저 이수 학점표는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전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경우에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별표 1) 졸업최저이수학점표는 2010학년도 후기(201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전학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졸업요건이 강화된 경우에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1) 졸업최저이수학점표’의 적용은 201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중 제91조 2항 및 (별표1)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3.3.1, 2003.7.1, 2004.3.1, 2004.4.15, 2005.3.1, 2007.3.1, 2008.3.1, 2009.3.1, 2010.3.1, 2011.3.1, 2011.4.13, 2012.3.1, 2013.3.1, 2014.3.1, 2015.3.1, 2016.3.1, 2017.3.1, 2018.3.1>

### 졸업최저이수학점표

학부(과)		졸업최저 이수학점	교양최저 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비 고
				복수전공 이수자	부전공 이수자	계	
항공·관광 경영학부	관광사업경영전공	130	39	42	50	60	
	항공운항서비스전공	130	39	42	50	60	
호텔경영학과		130	39	42	50	60	
외식·조 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30	39	42	50	60	
	외식산업전공	130	39	42	50	60	
	푸드스타일링전공	130	39	42	50	60	
	제과·제빵전공	130	39	42	50	60	
	전통발효마스터전공	130	39	42	50	60	
문화관광산업학과		130	39	42	50	60	
문화재학과		130	39	42	50	60	
보건의료관광학과		130	39	42	50	60	
실용음악 ·공연예 술학부	실용음악전공	130	39	42	50	60	
	공연예술전공	130	39	42	50	60	
	악기제작전공	130	39	42	50	60	
융·복합시 각예술디자 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30	39	42	50	60	
	패션·문화디자인전공	130	39	42	50	60	
	바이오·뷰티디자인전공	130	39	42	50	60	
뷰티미용학과		130	39	42	50	60	
태권도· 생활체육 학부	태권도전공	130	39	42	50	60	
	합기도전공	130	39	42	50	60	
	축구전공	130	39	42	50	60	
	생활체육전공	130	39	42	50	60	
특수체육교육학과		130	39	42	50	60	
사회복지학과		130	39	42	50	60	
간호학과		140	30	-	50	100	
환경에너 지·방재 학부	환경에너지전공	130	39	42	50	60	
	원자력시설관리전공	130	39	42	50	60	
	소방방재전공	130	39	42	50	60	
군사관학과		130	39	42	50	60	
연 계 전 공	문화관광정보학전공, 예술정보매체학전공, 스포츠산업경영학전공, 호텔회계정보학전공, 관광홍보학전공, 미국학전공, 일본학전공, 리조트개발설계전공, 도시환경설계전공, 문화콘텐츠산업학전공, 영미문화관광학전공, 일본문화관광학전공, 푸드코디네이터전공, 중국비즈니스학전공, 에너지융복합서비스학전공			36			
<p>◆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사회봉사 또는 글로벌리더십인증 1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편입학생은 별도로 이수할 필요 없음)</p>							

# 수업관리에 관한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업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수업관리 업무는 다른 규정에 정한 사항이 없으면 본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의견수렴) 본 규정의 개정시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 제2장 수강신청

- 제4조(수강신청 절차)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학기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원격전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학점) ①매 학기 신청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1,2학년은 매학기 취득기준 수강학점을 2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9.01.01.>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F등급이 없는 자는 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③주·야간 상호수강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졸업학기에는 6학점 이상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시간제등록학생은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⑥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 장기인턴학습을 신청한 자는 인터넷강좌, 기이수한 단기인턴학습 과목 또는 일반 교과목 중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3학점 이내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6.3.1.2016.12.13. 2017.3.1>
- ⑦8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자 및 학사학위 취득유예자의 수강신청학점은 0학점에서 18학점 범위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2016.12.13.> <개정 2019.01.01.>
- ⑧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 중 입학당시 만27세 이상인 자 및 본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본인 및 자녀의 수강신청학점은 1학점에서 18학점 범위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2016.12.13>
- 제6조(수강과목 변경)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강신청 변경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신청과목이 강의시간의 변경으로 다른 과목과 중복되거나 폐강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신청의 제한) ①특별한 사유 없이 취득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 자유교양, 전공, 기초교양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②강의시간표의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8조(수강신청의 효력) ①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②교과목이 분반되어 개설된 경우 지정된 분반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임의로 다른 강좌에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③수강 신청한 과목은 학기 중에 포기할 수 없다.

④재학 중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제9조(폐강) ①폐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목 : 20명 미만 (야간에 개설할 경우 5명 미만)

2. 전공과목 : 10명 미만(해당 학년의 재학생이 10명 미만 또는 야간은 5명 미만)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양 과목과 외국어전용강의과목 등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장 강의

제10조(강의계획서)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방법, 평가방법 및 강의진행 등이 명시된 강의계획서를 매학기 원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는 동일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공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강의계획서는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강의 시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학업성적에서 출석성적은 20%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강의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 및 강의실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재선택) ①교재의 선택은 담당교수가 선택하되 소속 학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담당교수 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소속 학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강의) ①강의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강의실의 사정이나 실험·실습·실기과목 등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양 및 전공과목별 분반기준을 설정하여 분반 강의를 할 수 있다.

③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장 수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수업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강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해당 강의담당자와 협의하여 강의동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강의) 학부(과)장은 산업체 및 학계의 인사를 초청하여 교양 또는 전문학술의 특별강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강의 7일전에 특별강의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수업시간

제1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제2항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6조(수업시간) ① 수업시간의 단위는 75분으로 한다.  
 ② 수업시간은 주중 균형 있게 분산·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실험·실습·연습 및 실기, 교직 등의 특수한 교과목 또는 총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장 출결관리

제17조(출석)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단위는 1교시를 의미한다.

점 수	출석단위	점 수	출석단위
20	30	14	24
19	29	13	23
18	28	12	22
17	27	11	21
16	26	10	20
15	25	실격	19이하

② 학생 출결상황을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총수업시간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미달로 하고 해당 교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지각과 조퇴 2회는 결석 1회로 계상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지정기한 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사지원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학기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유고결석의 경우 본 규정 제19조(유고결석)에 따른 사유에 한하여 인정한다.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 2-1-2~4

⑥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 교무처장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강의담당자의 출결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출석 방지) ① 부정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호명 시 학생얼굴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석부에 기재한다.

② 대리출석 적발 시에는 해당 수업시간을 결석처리하고, 대리출석 해당학생들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

③ 동일학생이 2회 이상 대리출석 적발 시에는 해당 교과목을 낙제로 처리한다.

제19조(유고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그 기간을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조·부모(외가, 처가 포함), 배우자,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병 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본인 입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5주 이내에서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국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군 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 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다만, 2주 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여학생 생리공결제	매월 1회(학기별 4회 제한)	병원진단서, 진료확인서 <개정2016.3.1.>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확인서
사범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 확인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신설2016.3.1.>	행사 참가기간<신설2016.3.1.>	행사참가 확인서류<신설2016.3.1.>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이 인정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한 경우 <신설2016.12.13>	행사참가기간 <신설2016.12.13>	행사참가확인서류 <신설2016.12.13>
7학기 이상 이수자로 취업이 된 경우 <신설2016.12.13>	취업기간 <신설2016.12.13>	재직증명서 및 그에 상응하는 서류 <신설2016.12.13>

- ②출석인정 신청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③시험기간은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여학생 생리공결제 및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⑤학생은 유고결석을 제외한 결석시수가 당해 학기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3.1.><개정2016.12.13>

제20조(강의평가) 총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이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1. 강의평가는 매학기 말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문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대상과목은 개설된 전 과목으로 하되 팀티칭 교과목, 인턴(현장실습) 교과목, 기타 총장이 인정한 과목은 제외할 수 있다.
3. 강의평가 실시 대상학생은 당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하며 미실시 학생에게는 해당학기 성적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범위와 방법, 결과에 따른 상벌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장 휴 · 보강

제21조(휴 · 결강) ①휴강 및 결강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교과목 담당교수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시간 15분후까지 출강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 시간은 결강으로 한다.

제22조(보강) ①휴강,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사전승인 없이 휴강 또는 결강하였을 때에는 총장은 즉시 보강을 명할 수 있다.
- ③과목담당 교수는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수강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필요시 보강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16.3.1.>
- ④보강은 기말고사 직전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보강) 행사, 실습, 기타 사정으로 휴강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수업, 토요수업 등 사전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장 제 재

제24조(제재) ①학점 당 이수시간을 미준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업적평가에 반영하여 감점한다.

- ②휴강 및 결강 후 보강을 미실시한 교원에 대해서는 업적평가에 반영하여 감점한다.

수업관리에 관한 규정 2-1-2~6

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평가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업성적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평가 업무는 다른 규정에 정한 사항이 없으면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의견수렴) 본 규정의 개정시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 제2장 성 적

- 제4조(성적 반영비율) 정기시험, 수시시험 등을 80% 반영하고 출석성적을 20% 반영한다.  
 제5조(성적평가 기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2016.12.13.>

등 급	A	B	C	D · F	비 고
비 율	30% 이내	40% 이내	40% 이내	30%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등록생, 특수체육교육학과와 전공과목, 교직과목, 외국어전용강의과목,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평균점수가 90점 미만이 되도록 평가할 수 있으며, 수강생이 5명 미만인 과목, 간호학과 통합·임상실습과목, 교직과목의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과목, 인턴학습 관련 과목, 해외학기제 관련과목,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절대평가 할 수 있다.<개정2016.12.13.>

③ 외식·조리학부 일부 실습교과목의 수준별 강좌 및 기초교양교과목 중 수준별 강좌의 성적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개정2016.3.1.,2016.12.13>

1. 초급 : 상대평가
2. 중급 : 평균점수 90점미만 상대평가
3. 고급 : 절대평가

④ 2인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는 동일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담당교수 전원이 협의하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운동부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성적평가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군입대자의 성적) 수업일수 3분의 2를 경과한 후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거나 수시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자퇴자의 성적) 해당학기 등록을 하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한 학생이 지퇴할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이 소멸되는 개강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성적공시 및 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하여 성적을 확정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평가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정정) ①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채점과정에서 오기, 누락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성적을 정정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성적은 이미 완료된 장학생 사정 등에는 반영할 수 없다.

제10조(학점의 인정) 제출된 성적이 제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성적부여가 엄정하지 못하다고 결정된 교과목의 경우 총장은 담당교수에게 다시 성적을 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과목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
3. 수강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한 학점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12조(성적의 포기) ①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포기할 수 있되,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개정 2016.1.11.>

②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성적이 확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포기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는 6학기이상 이수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포기한 성적도 장학사정 등에는 반영된다.

④<삭제 2016.1.11.>

제13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 실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F등급의 경우 실점평균 등의 계산 시에는 59로 처리한다.

등 급	평 점	실 점 수	비 고
A+	4.50	100 ~ 95	급 제
Ao	4.00	94 ~ 90	급 제
B+	3.50	89 ~ 85	급 제
Bo	3.00	84 ~ 80	급 제
C+	2.50	79 ~ 75	급 제
Co	2.00	74 ~ 70	급 제
D+	1.50	69 ~ 65	급 제
Do	1.00	64 ~ 60	급 제
F	0	59 이하	낙 제
S	0	70 이상	합 격
U	0	69 이하	불합격

제14조(평균평점) 매 학기 평균평점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균평점으로 한다.

제15조(성적관리) ①매 학기 성적은 전산으로 입력하고 취득학점과 평균평점 등을 산출케 한다.

②“F”처리된 과목은 평균평점 산출에 반영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당해 과목을 제외하고 평균평점을 재 산출한다.

③성적증명서는 “F”처리된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되, 2014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F”처리된 과목을 제외하고 평균평점을 재산출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6.3.1>

### 제3장 재수강

제16조(재수강 허용) ①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②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성적이 우수한 과목을 인정한다.

③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만 재수강을 허용한다.<개정 2016.3.1>

④<삭제 2016.3.1.>

제17조(재수강 신청요건) ①기본적으로 교과내용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2016.3.1.>

③폐강 처리된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다.

④학기당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3과목 이내로 한다.<신설 2016.3.1>

제18조(재수강 취득학점)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등급은 ‘B+’를 넘을 수 없으며, 동일과목의 재수강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6.3.1.>

제19조(재수강 성적표기) ①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균평점에 반영하여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개정 2016.3.1.>

② 낮은 성적이어서 평균평점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은 학기 성적처리 후 일괄 삭제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에 별도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6.3.1.>

③ 재수강하여 취득한 평점이 높은 성적은 R(Retake)로 표기한다.<신설 2016.3.1.>

## 제4장 학사경고

제20조(학사경고) ①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미만인 자, 3교과목 이상 또는 9학점 이상의 성적등급이 'F'와 'U'인 자에게는 학사경고하고 본인과 보호자 및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 및 시간제등록학생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적처분) 재학 중 연속 4회 또는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 학기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

제22조(특별지도) ①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에게 학업증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3.1.>

## 제5장 제 재

제23조(제재) ① 성적부여가 엄정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이중성적표 발행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관계법령과 정관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성적의 포기)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학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이념과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인 진·의·신·봉 정신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및 교육목적)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 및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편제

가. 일반대학원

나. 특수대학원 : 문화관광복지대학원<개정 2011.3.1, 2012.11.6., 2013.11.18>

2. 교육목적

가. 일반대학원 : 학문의 깊은 이론과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교수·연구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창의적·지도적·봉사적 인격체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

나. 문화관광복지대학원 : 문화, 관광 및 복지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및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문화·관광·복지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6., 2013.1.1, 2013.11.18>

다. <삭제 2011.3.1>

제3조(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조(학과의 설치 및 폐지) ①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경주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09.9.1>

②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 제2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외국인 학생 등 정원 외 입학자의 지원자격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8조(입학제한) <삭제 2015.11.23>

제9조(입학전형) ①신(편)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1>

②입학허가는 대학원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③모집시기, 전형방법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외국인 학생 등 정원 외 입학자의 전형방법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각 학위과정의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②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편입학) ①각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전형을 거쳐 학과 또는 전공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유사과목의 학점 인정은 학과(전공)장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승인하되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제3장 등록 및 학적

제12조(등록) ①학생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수업연한 이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③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휴학 및 복학)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출산 및 육아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2.20.>

②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복학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휴학 및 복학 등 학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제4장 수업 · 재학연한, 수업, 시험 및 성적, 학점, 전공, 수료

제1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수업연한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모두 4학기로 하며,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5학기로 한다.

②재학연한은 수업연한 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기간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4년, 박사학위과정 7년, 특수대학원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1>

③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 재적기간을 통산한다.

④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 전 재학기간을 통산한다.

⑤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업 및 휴업) ①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휴업일은 동·하계 방학,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이며 임시휴업일 지정 및 방학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업방법) 일반대학원은 주간수업을, 특수대학원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의 전원 동의 등 학사운영상 소속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야간 수업을 병행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실습, 실기 및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①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되 전공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

②수강 승인을 얻은 과목은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수강신청자가 일정 수 이하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21조(시험 및 성적) ①시험은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행할 수도 있다.

②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과목의 성질에 따라 실기, 실습, 구술, 과제물 및 세미나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sup>+</sup>	95 ~ 100	4.5	C	70 ~ 74	2.0
A	90 ~ 94	4.0	F	0 ~ 69	0.0
B <sup>+</sup>	85 ~ 89	3.5	S	70점이상	0.0
B	80 ~ 84	3.0	U	69점이하	0.0
C <sup>+</sup>	75 ~ 79	2.5			

④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와 시험 및 출석상황 등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⑤과목별 성적등급은 C (70점)이상을 급제로 하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매 학기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수강교과목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6.3.1.>

제22조(학점교류) ①각 대학원에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국내·외 협력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교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학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23조(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총 6학점까지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전공 결정 및 변경) ①전공을 결정하여 2학기초 1개월 이내에 전공희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공 변경은 1회에 한하되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5조(수료학점) ①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수료학점 외 학위취득(논문 미제출 졸업자 제외)을 위해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6조(수료) ①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상기 제25조 제1항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는 수료자로 인정한다.

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위과정별 수료 인정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제5장 교육과정 운영

제27조(교육과정)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교과목담당교수)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1>

②교과목 특성상 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학과목일 경우에는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③상기 ②항의 경우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추천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자격미달 시 또는 특별사유가 있는 자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

제29조(논문지도교수) ①석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0.3.1>

②상기 ①항 이외의 자로서 논문을 제출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학계의 권위자인 경우에는 학과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③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09.9.1, 2010.3.1>

## 제6장 자격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제30조(자격시험)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3.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한 자
4.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②학위논문제출은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또는 수료자에 한한다. 단, 박사학위의 경우는 박사학위 청구 논문제출 이전에 일반 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주 저자이거나 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 이내의 연구 논문에 한한다.<개정 2011. 3. 1>

제32조(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①학위논문은 지도교수 선정, 논문계획서 제출, 공개발표,

논문심사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관광복지대학원의 특수한 성격을 갖는 학과(전공)는 졸업작품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1.1. 2013.11.18>

③학위논문심사는 박사학위과정 5명, 석사학위과정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학위청구논문(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 제7장 학위수여

제33조(학위수여) ①일반대학원 :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특수대학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24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2.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0)이상인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6.3.1>

③각 대학원 석·박사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비논문학위 수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논문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하되 명예박사학위수여는 정규학위 수여일 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⑤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명예박사학위) ①국내·외적으로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와 지역 사회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또는 산업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본 대학교 대학원의 학술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수여받는 자의 공헌 및 공적에 따라 별도의 학위종별로 수여할 수 있으며 서식은 [별지 제5호]로 행한다. <개정 2007.3.1>

제35조(학위수여취소) 총장은 석사, 박사 또는 명예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논문 대필, 표절, 실험 대행, 금품 제공 등)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1>

제36조(학위복장) ①대학원별 학위종별 후드 색깔은 [별표 3]과 같다.

②후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신설 2007.3.1>

③학사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신설 2007.3.1>

④박사학위복 앞단 및 소매의 색상은 후드 색깔과 동일하게 한다. <신설 2007.3.1>

##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7조(공개강좌) ①공개강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연구생 및 특별연구생) ①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과정의 연구생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사학위과정의 특별연구생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의 선발절차,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의 서식으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0조(학생지도) 교육, 연구, 논문 등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41조(학생 활동 및 의무) ①능동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원우) 회칙에 따르되 회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생은 대학원 학칙과 규정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 및 징계) ①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장학금) ①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②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4조(직제) ①각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을 둔다.

②각 대학원 학과 및 전공에는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그 학과 및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③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 중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3.1>

제45조(대학원위원회) ①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수대학원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9.1, 2013.1.1., 2013.3.1., 2017.10.18.>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대학원위원회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
5.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07.3.1>

제47조(대학원위원회 회의) ①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4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1>

## 제11장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48조(제정 및 개폐) ①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총장이 한다. <개정 2009.9.1>

②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규정 중 변경된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9.1>

제49조(학칙의 개정) ①학칙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구성원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②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단, 입학 총정원의 변경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신설 2009.9.1>

제50조(보고) <삭제 2012.1.22>

## 제12장 대학원 자체평가

제51조(자체평가의 실시)①본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17.2.20>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본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2.20.>

③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2.20>

## 제13장 보 칙

제52조(준용) 이 학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9.1.,2017.2.20 >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산업경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전조의 폐지 학칙에 따라 각 대학원 재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하되 제43조에 한하여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1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8월 31일까지의 휴학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이 학칙 제33조 제2항 제2호는 2006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대학원 소속이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환경조경학과, 언론광고학과, 건설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영상예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변경된 영상예술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0.3.1>
- ②(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2010.3.1>
  - 1.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언론광고학과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2.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어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도시공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와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2.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관광조경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와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영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31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부동산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11.6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경영학과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호텔외식경영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 건설공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11.18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대학원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예술관광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학과(전공) 및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문화관광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예술관광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예술디자인학과의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문화산업예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문화예술관광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관광산업학과의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관광외식산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학위종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예술관광대학원 관광산업학과, 산업경영대학원 호텔외식경영학과에 소속되어 있던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졸업시 관광학석사를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3.1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관광복지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전공 재적생은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문화관광복지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전공 재적생은 문화예술학과 실용음악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개정 2006.3.1, 2007.3.1, 2010.3.1, 2011.3.1, 2012.1.1, 2012.11.6., 2013.11.18., 2015.11.23., 2016.3.1., 2016.5.30., 2017.10.19, [2018.5.14.](#)>

**2018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1)**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5명
		자연계	간호학과		10명
문화관광복지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a href="#">문화예술학과</a>	문화예술기획학전공 <a href="#">실용음악·악기제작학전공</a>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2018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5명
		자연계	간호학과		10명
문화관광복지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 2017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5명
		자연계	간호학과		10명
문화관광복지 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 2016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1)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5명
		자연계	간호학과		10명
문화관광복지 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2016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0명
	석사	공 학 계	에너지융복합서 비스학과		5명
		자 연 계	간호학과		10명
문화관광복지 대학원	석사	예 체능계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 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별표2】 <개정 2006.3.1, 2007.3.1, 2010.3.1, 2011.3.1, 2012.01.01., 2013.1.1., 2013.11.18., 2015.11.23., 2016.3.1., 2016.5.30., [2018.5.14](#)>

**학위종별 및 해당학과(전공)**

대학원	학위종별	학 과	전 공
일반대학원	관 광 학 박사 문 학 박사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관 광 학 석 사 문 학 석 사 간 호 학 석 사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간호학과	
	예 술 학 석 사	<a href="#">문화예술학과</a>	문화예술기획학전공 <a href="#">실용음악·악기제작학전공</a>
문화관광복지대 학	관 광 학 석 사	관광외식산업학과 문화재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사 회 복 지 학 석 사	사회복지학과	

【별표3】〈개정 2006.3.1, 2007.3.1, 2010.3.1, 2011.3.1, 2012.01.01., 2013.1.1., 2013.11.18., 2015.11.23., 2016.3.1., 2016.5.30., **2018.5.14**〉

### 학위종별 후드 색깔

대학원	해당 학위	후드 색깔	해당 학과	해당 전공
일반대학원	관광학 박사 문학 박사	밝은파란색 흰 색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관광학 석사 문학 석사 간호학 석사	밝은파란색 흰 색 노란색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간호학과	
	예술학 석사	보라색	<b>문화예술학과</b>	문화예술기획학전공 <b>실용음악·악기제작학 전공</b>
문화관광복지 대학원	관광학 석사	밝은파란색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자주색	사회복지학과	



【별지 제2호 서식】 학술학위(석사)

석 제 호

#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명 :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석)

【별지 제3호 서식】 전문학위(석사)

석 제 호

#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명 :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석)

【별지 제4호 서식】 학술학위(박사)

박 제 호

#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  
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에 통과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  
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명 :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박)

【별지 제5호 서식】 명예박사학위 <개정 2007.3.1>

명박 제 호

# 학 위 기

본(국)적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_\_\_\_\_

\_\_\_\_\_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므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  
사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명박)

【별지 제6호 서식

#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_\_\_\_\_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조 제3항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전형시기) 입학전형은 년1회 또는 2회에 걸쳐 매 학기 개시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06.3.1〉

제3조(입학전형공고)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형실시 전에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전형구분) 입학전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

제5조(지원자격) 각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삭제 2013.1.1〉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가.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단, 군인은 영관급 장교) 〈개정 2006.3.1〉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소의 연구원

라.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마. 관련 업체의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개정 2006.3.1〉

바. 대학원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4. 연구과정 및 특별 연구과정

가.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석사학위과정과 같다.

나. 특별연구과정은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박사학위과정과 같다.

제6조(전형요소) 입학전형의 전형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학위과정, 계열 및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전형 〈개정 2009.8.1〉

가. 필답고사(전공, 외국어 등)

나. 전적 대학(원) 성적

- 다. 면접고사
- 라. 실기고사
- 2. 특별전형
  - 가. 전적 대학(원) 성적
  - 나. 면접고사
- 3.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
  - 가. 전적 대학(원) 성적
  - 나. 면접고사

제7조(제출서류)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 3. 연구과정 및 특별 연구과정
  - 가.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함.
  - 나. 특별 연구과정은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함.

제8조(전형료)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출제 및 채점위원) 각 대학원장은 입학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위하여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출제 및 채점위원을 위촉한다.

제10조(합격자 사정) 합격자 사정은 입학전형 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11조(편입학) ①편입학전형은 신입학전형과 동시에 시행하되 시행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상 수료하고 일반대학원은 6학점 이상, 특수대학원은 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편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편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2. 타 대학원 재학(수료)증명서 1부.
- 3.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4. 기타 필요한 서류

④편입학전형은 신입학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2조(재입학) ①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②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재학 시 학업성과 품행 등을 심사한 소속 학과(전공)장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입학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서류의 보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입학관련 서류는 학위 취득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학생전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조 제4항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북한 이탈 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개정 2008.3.1>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조(지원자격)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3. 상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정 2008.3.1., 2013.9.1., [2017.10.19.](#)>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유효기간 무관) 또는 본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과정 3급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국내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나. 영어능력시험 TOFEL PBT 490점(CBT 165점, iBT 58점) 또는 TOEIC 625점 또는 그 외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의 이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유효기간 무관) 취득자

다. 가 ~ 나 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체능계 지원자의 경우, 지원학과 학과장 명의의 실기능력인증서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라. 나 ~ 다 의 자격요건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졸업전까지 본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과정 3급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마.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자격은 정원 내와 동일하다.

제4조(입학시기) 외국인 학생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국내학생의 입학시기와 동일하다.

제5조(입학지원서류) ①외국인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국적 및 대상자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②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3,4호 및 기타 요구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08.3.1>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석사학위과정 지원자)
3.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
4.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
5. 편입학 지원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타 대학원 재학(수료, 졸업)증명서, 타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신설 2017.10.19.>
6. 학생,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중국인: 호구부 해당)<개정 2009.5.1.>

- 7.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 1부
  - 8. 부모 및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 각 1부 <개정 2008.3.1>
  - 9.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증빙자료 또는 실기능력인증서(각 해당자) 1부<신설 2008.3.1.><개정 2009.5.1.><개정 2017.10.19>
  - 10. 본교 재학 최종학년 지도교수의 추천서 및 재직증명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1만불 이상 예금,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예치)<개정 2009.5.1>
  - 11.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신설 2008.3.1><개정 2009.5.1>
  - 12. 재정보증인의 수입증명서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서 1부 <신설 2008.3.1><개정 2009.5.1>
  - 13. 생활비 조달 계획서(소정양식) 1부 <신설 2008.3.1><개정 2009.5.1>
  - 14. 기타 필요한 서류<개정 2009.5.1>
- ③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하는 직후학기에 지원하는 자는 ②항의 1, 2, 3, 4, 7, 10, 14호의 서류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5.1><개정 2017.10.19>

제6조(입학전형)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서류전형
- 2. 면접고사

**3. <삭제 2017.10.19.>**

제7조(학칙준수)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의 학칙과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외국인학생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등록및학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장 등록 및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등록이라 함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정규등록, 학점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②정규등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학점등록은 수업 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수료학점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청한 학점 또는 수료자가 비논문학위취득을 위하여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학점이 3학점 이하이면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이면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는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3.1, 2008.3.1>

제3조(수업료 인정) ①미등록 휴학자는 복학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료를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수업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학기의 수업료를 대체 인정한다.

1.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수업료 전액으로 인정한다.
2.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대체 인정한다.
3.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업료를 납부하고 총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

제4조(수업료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8.3.1, 2012.6.1>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2.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8.3.1>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휴학) ①질병,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

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병역 의무 복무기간과 4주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사고 및 천재지변을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3.1>

③계속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연기 1회는 휴학 1회로 한다.

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6.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9조(재입학) ①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자퇴 및 제적이전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자퇴 및 제적이전의 횟수에 포함한다.

제10조(편입학) ①편입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편입 전 재학기간을 통산한다.

②편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편입학 전의 횟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학적관리) ①학적은 전산으로 관리하되 교학과 책임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열람, 복사, 수정, 삭제 할 수 없다. <신설 2006.3.1>

②학적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무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 및 오기일 때는 신고로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제12조(증명서발급) ①증명서 발급 대상은 각 대학원 및 공개강좌 재학생, 졸업생과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6.3.1>

②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06.3.1>

1. 재학증명서 :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2. 재적증명서 : 각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수료증명서 : 각 대학원의 수료 인정 학점을 취득한 자
4. 학위수여증명서 : 각 대학원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5.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각 대학원의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 예정인 자
6. 휴학증명서 : 각 대학원에서 휴학 중인 자
7. 성적증명서 : 각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 8. 장학금 수혜/비수혜 증명서 : 장학금 수혜/비수혜 사실이 있는 자
- 9. 교육비납입증명서 : 각 대학원 및 공개강좌 등록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자
- ③ 전 항의 제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3.1>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등록및학적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이 규정 제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8월 31일까지의 휴학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특수대학원 수료자 중 학위논문 대신 학점취득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이 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장 수업·재학연한, 수업, 시험 및 성적, 학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 수업은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3조(수강신청) ①등록을 마친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웹학사서비스에 접속하여 교과목담당교수가 게시한 강의계획서를 참고하고 학과(전공)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매 학기 전공과목의 취득기준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과목, 보충과목 및 논문지도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 후 1주일 이내 수강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④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허가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조(폐강) 인접차학기의 재학생과 공동으로 수강할 수 있되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제5조(강의) ①강의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학기 강의방법, 평가방법 및 강의 진행 등이 명시된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에 웹학사서비스에 접속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8.1>

제6조(시험) 시험은 정기적으로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7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세미나, 실기 등 수업 기여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출석 성적은 2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명 이상은 B+ 이하의 성적을 주어야 한다. 단, 수강생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1>

③각 과목의 성적은 C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하되 A+, A, B+, B, C+, C, F 등급으로 표시하고 보충과목 및 논문지도 과목은 S(통과), U(낙제)로 표시한다. <신설 2006.3.1>

제8조(성적공시 및 정정)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성적평가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 신청을 받은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하여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시험답안지, 과제보고서, 실습보고서 등 성적 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포기) ①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 포기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포기한 성적도 장학사정에는 반영한다.

제10조(휴·결강 및 보강) ①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 또는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전 승인 없이 휴강 또는 결강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즉시 보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학점)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학점인정일수) 타당한 사유가 없이 한 학기 중 수업일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2.1.>

제13조(논문지도 학점) ①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제출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으로 논문지도 교수가 부과하는 학점이다.

②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3·4학기 특수대학원은 4학기에 논문지도 학점을 신청하여야 하며 석사 1학점, 박사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료학점 이수자) ①석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②박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제15조(편입생의 학점인정) ①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의 학점 인정은 학과(전공)장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승인하되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제16조(재학생의 학점인정)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제17조(학부생의 학점 인정) ①본교 학부생이 석사학위과정의 개설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그 취득학점을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취득학점은 B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상호 이수학점인정)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 8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휴학자의 성적인정) 휴학자의 성적인정은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성적이나 수

시시험 등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2.1.>  
제20조(출석부 관리) 출석부는 교과목담당교수가 관리하고 출결상황은 매 시간 담당교수가 확인 및 표시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성적평가결과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장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목 및 학점) ①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공과목 : 전공학문의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2. 선택과목 : 전공과목 외에 타학과(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3. 보충과목 : 비동일계 출신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4. 논문지도과목 : 학위논문제출을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②과목당 1학기 학점수는 일반대학원 3학점, 문화관광복지대학원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 2013.11.18>

제3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①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개편된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각 대학원장이 개편할 수 있다.

②대학원별, 학위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80 ~ 100학점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60 ~ 80학점
3. 문화관광복지대학원 : 60 ~ 80학점(단, 관광외식산업학과는 80 ~ 100학점)<개정 2013.1.1.,2013.11.18>
4. <삭제 2013.1.1.>

제4조(교과목 설정) 교과목은 국제적 학문수준에 맞는 각 과정의 학문수준과 해당 학과(전공)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과목 개설) ①교과목은 매 학기마다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제출한 교과목개설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각 대학원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각 대학원장이 직접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8.1>

②학생들에게 수강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취득기준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되 매 학기 개설 과목 수(학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1>

제6조(보충과목 이수) ①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비동일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전공)장이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하되 매 학기 신·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보충과목은 학과(전공) 내규로 정한 과목(8과목 이상)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되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7조(보충과목 지정) 보충과목은 학과(전공)장이 매 학기 수강신청전에 내규로 정한 과목 중에서 지정하되 지정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교과목 담당교수) 강의, 실험 및 실기를 담당할 교수의 자격은 본교 전임 교원과 위촉된 시간강사로 한다.

제9조(담당과목 제한) 동일교수가 한 학기당 담당하는 과목수는 1과목(논문지도과목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강사의 위촉) ①교과운영상 시간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학칙 제28조에서 정하는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강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장은 시간표 작성 이전에 시간강사를 추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주당 2과목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간강사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2. 소속 기관(단체)자의 출강승인서(해당자)
3. 이력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6. 주민등록 등본

④위촉되었던 시간강사는 전항 제1, 2호의 서류만 제출하되 나머지 제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제11조(담당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목담당교수(시간강사 포함)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학과(전공)장은 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교과목담당교수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운영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7조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0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자격시험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자격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종합시험 :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제4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학과(전공)장이 다른 외국어(한문포함)를 선택할 수 있으나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2. 종합시험 : 종합시험과목은 매 학기 학과(전공) 교수회의로 결정한 과목(박사:6과목, 석사:4과목)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되,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9.8.1>

제5조(시기 및 관리) ①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 및 9월 중에 실시한다.

②종합시험은 매년 4월 및 10월 중에 실시한다.

③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과목별 배점 및 과락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과목당 60분을 원칙으로 하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얻은 자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다만, 외국어시험에서 영어 교육전공 학생은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7조(합격인정) 영어시험 대상자 중 TOFEL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또는 TOEIC 700점 또는 그 외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지험의 이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 취득한 자와 한국어시험 대상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C) 4급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8.1., 2017.10.19.>

제8조(출제 및 채점위원 위촉) ①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 교원에게 출제를 위촉할 수 있다.

②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지정된 과목담당교수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전형료)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시험) 자격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은 동일과목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졸업논문집 제출자격) ① 학위과정별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과정

- 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비동일계 출신자는 보충과목 9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 <개정 2009.8.1>
- 나. 전학기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 다. 논문지도 학점(2학점)을 취득한 자
- 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 바. 박사학위 청구 논문제출 이전에 일반 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주 저자이거나 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 이내의 연구논문에 한한다.<신설 2011. 3. 1>

2. 석사학위과정

- 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학기 이상(일반대학원), 5학기 이상(특수대학원)의 등록을 마친 자(비동일계 출신자는 보충과목 9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개정 2009.8.1>
- 나. 전학기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 다. 논문지도 학점(1학점)을 취득한 자
- 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② 문화관광복지대학원의 특수한 성격을 갖는 학과의 경우에는 졸업작품으로 학위 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졸업작품 제출 자격은 작품지도학점을 취득한 자로 졸업작품 공개전시회의 개최와 졸업논문집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 2013.1.1., 2013.11.18>

③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학기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논문 및 작품지도교수)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0.3.1>

② 상기 ①항 이외의 자로서 논문을 제출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학계의 권위자인 경우에는 학과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③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3.1><개정 2009.8.1, 2010.3.1>

④공동지도의 경우 정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이어야 하며, 공동지도할 수 있는 외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8.1, 2010.3.1>

⑤지도교수는 2학기초 1개월 이내에 학과(전공)장의 제청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3.1>

⑥2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3.1>

⑦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

제4조(논문지도 학생수) 논문(작품)지도교수의 지도 학생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증감 할 수 있다.

제5조(논문지도) ①논문지도 기간은 논문(작품전시)계획서 제출 이후 본심사 완료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논문지도는 매주 2시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6.3.1>

제6조(논문계획서, 작품전시계획서 발표 및 심사) ①논문(작품전시)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3학기(일반대학원), 4학기(특수대학원) 시작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논문(작품전시)계획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장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심사하되 학과(전공)장이 지도교수일 경우에는 소속 교수 1인이 심사하여야 한다.

③논문(작품전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논문제목
2. 문제의 제기(필요성, 연구과제, 목적)
3. 이론적 배경 및 근거
4. 가설
5. 연구방법
6. 기대되는 효과
7. 참고문헌 등

④ 논문계획서 발표 이후 논문지도 중 논문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미한 내용은 지도교수가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논문(작품전시)계획서 심사에 합격하면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지도교수는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논문(작품전시)계획서발표 결과를 즉시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간호학과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내부규정에 따라 추가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9.>

제7조(공개발표 및 공개작품전시회) ①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기초 1개월 이내에 공개

발표(공개 작품전시회)를 하여야 하며, 공개발표(공개작품전시회)에 통과한 자는 논문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되 논문계획서 심사위원은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도교수는 공개발표(공개작품전시회) 종료 후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구성) ①심사위원 구성은 박사학위과정은 5명, 석사학위과정은 3명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학과(전공)장과 협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인사는 2인 이내에 한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 2018.2.1.>

③석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인사는 1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단, 학문 연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 소지자나 논문을 제출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학계의 권위자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8.1, 2010.3.1>

④지도교수와 외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이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장의 권한) ①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임무) ①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참고 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사하고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타인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는지, 이미 발표된 논문 부분이 청구논문에 삽입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발표 신청 및 발표) ①논문(졸업논집)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논문발표는 심사위원, 학과(전공)교수 및 관련 전공분야 연구자들이 참석 하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 졸업논집의 심사 순서) 석사학위과정은 예비 심사, 본 심사(구술심사 포함)순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은 예비 심사(1차 및 2차), 본 심사(구술심사 포함)순으로 실시한다.

제13조(예비심사) ①논문(졸업논집)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 또는 졸업

논집(석사 3부, 박사5부)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 문헌 등을 논문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예비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통합하여 논문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2.1>

④예비 심사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에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속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3.1>

⑤학위과정별 심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

나. 논리적인 전개와 타당성

다. 내용의 창의성 여부

라. 이미 발표된 논문부분의 삼입 여부

마. 수정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

2. 박사학위과정(1차 예비 심사는 석사학위과정 심사내용에 준하며, 2차 예비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정 보완 이행 여부

나. 논지의 명확성

다. 논문체제의 적합성

라. 참고문헌 활용

마. 모든 인용문 확인 등

제14조(본심사) ①논문(졸업논집) 발표자는 본 심사 1주일 전에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 논문 또는 졸업논집(석사 3부, 박사 5부)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심사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 보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본 심사는 반드시 구술심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구술심사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내용과 전공지식 및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본 심사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에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 일정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 교수 회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3.1>

제15조(심사결과 보고) ①본 심사(구술심사 포함)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이를 졸업사정을 위한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심의용 완성 논문 3부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 중에서 위촉한

- 별도의 논문심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작성 언어) 논문(졸업논집)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문의 성격상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본심사 평가) ①본 심사(구술심사 포함)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은 2명, 박사학위과정은 4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②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종합평가 하되 종합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1. A등급(95점 이상) : 최우수논문
  2. B등급(90점 이상) : 우수논문
  3. C등급(80점 이상) : 보통논문
  4. D등급(79점 이하) : 불합격
- 제18조(논문, 졸업논집의 재심사) 논문(졸업논집)의 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우수논문 포상) ①우수논문(졸업논집)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우수논문심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 제20조(논문, 졸업논집의 제출) 본 심사에 최종 합격하고 학위수여가 결정된 자는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 1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1. 학위청구논문(학위청구졸업논집) 제출신청서
  2. 학위논문(졸업논집) 6부(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
  3. 학위논문(졸업논집)이 수록된 디스켓 1부
- 제21조(논문, 졸업논집 체제) ①논문의 구성과 내용, 형식은 별도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 ②졸업논집의 제작형식은 일반논문집에 준하되 전시회에 발표된 작품은 사진형태로 인화하여 15매 이상 30매 이하를 신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련된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

의 심사 관련 사항은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장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는 년 2회로 하되 2월과 8월 중에 행한다.

제3조(학위수여자격) 학위수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일반대학원 4학기, 특수대학원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마. 특수대학원의 비논문학위 취득자는 3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0)이상인 자 <신설 2008.3.1>

2. 박사학위과정

가.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제4조(학위수여결정)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6조(학위수여취소)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명예박사학위수여 절차) ①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한다. <개정 2008.3.1>

②명예박사 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개정 2008.3.1>

③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여 여부는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8.3.1>

④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8조(학위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2-2-9~2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위수여와 취소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명예박사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개강좌및연구생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에 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강좌)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

제3조(개설 계획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3.1>

1. 공개강좌명
2. 목적 또는 필요성
3. 학급 편제 및 정원
4. 담당교수명
5. 기간 및 강의시간표
6. 이용되는 교육시설
7.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8. 이수 사정기준
9. 기타 필요사항

제4조(수료증)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징수) 공개강좌 수강자에게 강좌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 비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설치하며 이 과정의 학생을 각각 연구생 또는 특별연구생이라 한다.

제7조(연구생의 수업연한)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연구생의 수료학점) 일반대학원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의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특수대학원 연구과정의 수료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9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학위 과정의 80%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증명서)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생의 신분) 연구생 및 특별 연구생에게는 학생증이 발급되며 재학생과 동등한 시설 이용권이 부여된다.

제12조(연구생 제적)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등록 취소 및 제적을 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지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칙준수) 학생은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에 정진하고 대학원생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3조(취업보고) 학생은 졸업 시 취업상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 학생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전공분야에 관계되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단체활동) 연구활동과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만들 수 있으나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징계) 학생의 신분이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하고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금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 장학금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의 장학금 종류 및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5.3.1, 2006.3.1, 2008.3.1, 2010.3.1, 2010.6.1, 2011.7.1, 2012.6.1, 2013.1.1, 2013.6.1., 2013.9.1., 2017.2.14. 2017.10.11., [2017.10.19](#)>

장학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기간	지급범위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중 대학원별 직전 학기 성적이 1위인 자	수업료의 50%	해당학기	석사학위과정
면학장학금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 (편입생제외) 재학중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편입생제외)	수업료의 30%	해당학기	석·박사학위과정
본 교 출 신 자 장 학 금	본교 출신자 중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 및 재학중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수업료의 50%	해당학기	석사학위과정
동일재단출신자 장학금	동일재단 출신자중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이3.0이상인 자	수업료의 50%	해당학기	석사학위과정
외국인장학금	<u>외국인전형자</u> 중 입학 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수업료의 50%	해당학기	석·박사학위과정
<u>가족장학금</u>	<u>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중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u> <u>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u>	<u>수업료의50%</u>	<u>해당학기</u>	<u>석·박사학위과정</u>
<u>지역인재장학금</u>	<u>경주소재 관·산·연·학계 재직 중인자 중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u> <u>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u>	<u>수업료의50%</u>	<u>해당학기</u>	<u>석사학위과정</u>

※ <삭제 2011.7.1>>

※ 성적우수장학금은 대상자가 2개 학과(전공) 또는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과장이나 전공주임교수간 협의하여 추천함. <신설 2005.3.1>, <개정 2010.6.1>

※ 삭제<2011.7.1.>

※ “가계곤란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학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9.1>

제3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개인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장학금액 및 지급내용 등은 개인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선발방법) 신입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재학생은 수혜자격이 되면 별도 심의 없이 자동 선발된다.
- 제5조(지급방법) ①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등록 시 납입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교외장학금은 본교 총무회계팀에 입금 시킨 후 지급한다. <개정 2009.12.1., 2017.10.18.>
- 제6조(수혜기간) 수혜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편입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7조(수혜조건) 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제8조(특별장학금) 수상자, 표창자, 공로자 등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학금 중복금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 지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교외 장학금은 제외한다.
- 제10조(연구비 지급) 각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에게 교내 또는 교외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1.7.1>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변경된 장학금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으로 학생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변경된 장학금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변경된 장학금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변경된 장학금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장학금에 관한 규정 2-2-12~4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전공)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 제2항의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장의 선정) 학과(전공)장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학과장의 임무) 학과(전공)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과(전공) 학생들의 지도 및 감독
2. 교과과정 운영
3. 논문지도교수 선정
4. 학생들의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지도
5. 타 학과(전공)와의 협조
6. 조교에 대한 지도감독
7. 학점에 대한 지도 및 확인
8. 학위논문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의 지도 및 확인
9. 학생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10. 기타 학과(전공) 관련 업무

제4조(학과교수회의) ①학과(전공)장은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학과(전공)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②학과(전공)장은 학과(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학칙 및 제규정 범위 안에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되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대학원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기획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기획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원장, 정보전산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2인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17.10.18.>](#)

③간사는 대학원 교학과 직원이 된다.

④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자체평가 기본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전체 구성원들에 대학원자체평가 중요성 및 인식고취
3. 대학원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심의
4. 대학원자체평가 총장 결과보고 및 개선 건의

제4조(연구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위원장은 기획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대학원 교학과 직원이 된다.

⑤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자체평가의 분야별 연구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2. 대학원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3. 대학원자체평가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담당영역별 연구
4. 대학원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집필

제5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자체평가 관련부서의 장 또는 실무직원으로 기획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대학원 교학과 직원이 된다.

⑤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자체평가 실시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2. 대학원자체평가에 관련된 제반자료 생성 취합 및 제공
3. 대학원자체평가 실무행정지원

#### 4.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집필 지원

제6조(연구위원 대우) 총장은 연구위원인 교수의 활동내용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비 및 수당) ①각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에게는 연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비 및 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기획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를 대표하며 연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연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기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 자체 평가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경주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원 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원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 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시기) 대학원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평가기구

제7조(평가관) ① 대학원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

② 평가관은 대학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역량 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원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는 대학원 교학과에서 담당한다.

제8조(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① 대학원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9조(평가계획 수립) 대학원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계획을 일반대학원

대학원 자체 평가에 관한 규정 2-2-15~2

및 특수대학원(학과)과 행정부서에 통지한다.

제10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는 대학원 교학과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1조(평가실시) ① 대학원 교학과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실사) 자체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보고) 평가관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와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의 서류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생 권리장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③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④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심사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이 학사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9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원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제13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권리장전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